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일반 강좌
제주학연구센터 2층 강의실

공개 강좌
제주문학관 대강당

2023.
11. 22. ~ 12. 13.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독하다

I 강좌 개요

- **강좌명:** 승정원일기 탐독 – 승정원일기를 탐독하다
- **기간:** 2023년 11월 22일 ~ 12월 13일, 매주 수요일 14:00 ~ 16:00(총 4회)
- **내용:**
 - 조선시대에 편찬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 기록이며, 오늘날 다양한 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승정원일기』 속 왕대별 제주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편찬하는 사업을 8년째 수행해 오고 있음.
 - 이번 강좌는 그간의 번역 성과를 돌아보고,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귀중한 기록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 특히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에 나타난 제주 역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주도민과 함께 재미있게 탐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대상:** 제주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장소**
 - 1) 일반 강좌: 제주학연구센터 2층 강의실
 - 2) 공개 강좌: 제주문학관 대강당 / 누구나 참여 가능

II 강의 내용

구분	일자	주제	강사
일반 강좌	11/22(수)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1/29(수)	17·18세기 제주지방 官人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12/6(수)	기록으로 보는 정조의 제주 통치론	김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공개 강좌	12/13(수)	조선조 기록문화의 꽃,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중심으로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독하다

제1강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	8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강	17·18세기 제주지방 官人 묵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26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제3강	정조의 제주통치론	58
	김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1강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세계기록유산, 『승정원일기』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승정원일기』⁸는 어떤 책인가.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의 업무를 기록한 일지다. 여기서 ‘출’은 국왕에게서 나온 명을 각 관서와 신료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고, ‘납’은 각 관서와 신료의 보고를 국왕에게 올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승정원의 업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계품啓稟·전지傳旨·제향祭享·거동舉動 등으로 사실상 국정 전반에 걸쳐 국왕을 보좌하고 대행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에 담긴 내용은 승정원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관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제를 인체에 비유하면 국왕은 대뇌이고 종친은 폐부, 대신은 넓적 다리와 팔뚝을 의미하는 고평股肱, 승정원은 목구멍과 혀라는 뜻의 후설喉舌이다. 즉 승정원은 국왕의 말을 대변하는 중요한 관서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이며, 도승지는 비서실장이라 할 수 있다. 승정원을 부르는 말은 두 글자로 줄여 정원政院이라고도 하고, 후설에 비유해 후원喉院이라 일컬기도 했다. 승정원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은대銀臺

8 승정원일기를 탐訖하다

가 있다. 은대는 황제에게 올리는 글과 각종 공문을 관리한 중국 송나라 문하성의 은대사銀臺司에서 유래한다.

『승정원일기』와 같은 조선시대 관서의 업무일지로는 『비변사등록備邊司臘錄』과 『내각일력內閣日曆』 등이 있다. 『비변사등록』은 비변사의 업무 일지로 1616년에서 1892년 까지 273책이 현전하며, 『내각일력』은 이문원擣文院의 업무일지로 1779년부터 1883년 까지 1249책이 전해온다. 이와 비교해보면 『승정원일기』는 1623년부터 1910년까지 3243책이 현전하는데, 모두 39만3578장에 2억4300만 자에 달하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실록의 다섯 배가량 되는 것으로 한 책에 수록된 정보로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다.

『승정원일기』는 1999년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방대하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서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승정원일기』 3243책에는 『승선원일기』와 『궁내부일기』 『비서원일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서실의 기능을 한 승정원이 근대 개화기 이후 제도 변화에 따라 승선원·궁내부·비서원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이며, 책의 체재는 『승정원일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승정원의 조직과 『승정원일기』 편찬

1) 육선루六仙樓에 오른 여섯 승지

승정원에는 도승지를 비롯해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로 정3품 관원인 6명의 승지를 두었다. 승지 아래에는 정7품 관원인 주서注書 2명,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이 있었고, 이들과 함께 승지와 주서의 업무 수행을 돋는 서리 25명과 사령 35명 등의 하례下隸가 있었다. 승정원 관원들은 밤낮없이 내려오는 왕명을 전달하고, 수없이 많은 관서와 관원들이 올리는 문서를 접수하여 국왕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승정원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량은 어느 관서보다 많았고, 그 위상 또한 다른 관서

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렇듯 승지들의 바쁜 업무를 짐작할 수 있는 그림첩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해온다. 1623년에 그려진『은대계첩銀臺契帖』은 도승지 김상현金尙憲(1570~1652), 좌승지 이명한李明漢(1595~1645), 우승지 강홍중姜弘重(1577~1642), 좌부승지 이민구李敏求(1589~1670), 우부승지 이경석李景奭(1595~1671), 동부승지 목서흡睦敍欽(1571~1652)의 인적 사항과 이들이 지은 여섯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계첩에는 승정원에서 승지들이 근무하는 장면을 그린 계회도 한 점과 산수화 한 점이 함께 장황되어 있다.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승지들은 산수의 풍광을 찾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승정원 안에서 계회를 가지면서도, 이 산수화에 그려진 자연에서 진정으로 계회하고 싶은 심경을 나타낸 것이다. 승지들의 계회도는 이처럼 다른 관서의 관원들이 연회하는 분위기에서 술과 음식이 등장하고 자유로운 장면을 그린 것과는 차이가 있다.

승지는 조선시대 관료제의 핵심 관직으로 판서(정2품)와 정승(정3품)으로 승진하는 관문이었다. 판서와 정승으로 승진했던 승지를 들자면 황희, 김종서, 류성룡, 박세당 등이 있다. 승지는 다양한 관직을 겸임하면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다. 경연에 참찬관參贊官으로 참석하여 국왕의 자문에 응했고,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으로서 실록을 편찬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여기에다 도승지는 홍문관의 직제학을 겸직하여 지제교知製敎로서 교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상서원尙瑞院의 정교으로서 국왕의 인장과 부신符信 등을 관리했다. 이러한 승지의 위상은 여섯 승지가 사용했던 이층 누각을 ‘육선루六仙樓’라 불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도승지를 중심으로 승지 간의 예우나 업무 규정 등에는 엄격한 위계가 있었다. 6명의 승지는 조선시대의 육조六曹 체제에 따라 각기 한 방씩 담당했다. 이는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 및 행정부의 유기적 기능과 동일한 시스템이다. 도승지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을 맡았는데 이상을 동벽東壁이라 했고,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을 맡았는데 이상을 서벽西壁이라 했다. 조선시대에는 관서의 관원이 모두 자리할 때 위계에 따라 좌석의 위치가 결정되었는데, 남향으로 바라볼 때 왼쪽인 동쪽을 오른쪽인 서쪽보다 우대했다.

승지방承旨房을 배정한 분방分房은 전교축의 좌목座目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지방의 배정은 순방順房과 환방換房이 있다. 순방은 도승지부터 순차대로 여섯 승지가 담당할 방을 배정하는 것이고, 그중 사유가 있어 특정 방을 서로 바꾸는 것이 환방이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전교축의 좌목을 보면 우승지가 병방을 맡고 좌부승지가 예방을 맡았다. 보통은 우승지가 예방을, 좌부승지가 병방을 담당한 것이 순방인데, 여기서는 우승지와 좌부승지가 환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방의 승지가 사정이 생겨 업무를 볼 수 없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도록 두 방씩 짝을 지어놓았는데, 이를 대방代房이라 했다. 즉 이방과 예방, 호방과 공방, 병방과 형방이 서로 대방이 되었다.

『은대조례銀臺條例』에는 승정원 승지의 위상과 업무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규정들이 있다. 승지는 품계가 정3품이므로 조정의 신하 중 종2품부터 정2품, 종1품, 정1품까지 모두 승지보다 품계가 높았다. 그러나 승지는 정2품 이상의 정경正卿에게만 예우를 하고 그 외의 신하가 용건이 있어 승정원으로 와 승지에게 예를 행하면 승지는 맞절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품계 바로 위에 있는 종2품에게는 자리 앞에서 약간 떨어져 손을 들었을 뿐이다. 정경 이외에 선배 승지가 아닌 신하를 궐 안으로 불러들이거나, 승정원에 문서를 가지고 온 신하는 승정원의 하례가 망문望門에서 차례대로 부르는 것을 기다려야 했다.

도승지는 승지 내에서도 그 위상이 대단해 도승지가 육선루六仙樓에 오르면 하위 승지는 관대冠帶를 풀고 누에 오를 수 없었다. 또한 도승지의 방에서 하위 승지는 담배를 피우거나 부채질을 할 수 없었다. 도승지가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국왕에게 올릴 결재 서류를 들여보낼 때 승지들은 모두 출근해 있어야 했다. 새로 임명된 도승지는 3일 안에 승지 전원이 출근하면 권슬례拳膝禮를 행했다.

승정원은 국정 운영 전반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관서였던 만큼 근무 기강이 엄했다. 관원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해당 관서의 규정에 따라 연속해서 입직하는 것을 ‘주도做度’라 일컬었다. 처음 임명되어 온 승지의 주도 기간은 13일이었다. 승지가 연속하여 입직하도록 규정된 일수를 마치기 전에 돈화문 안쪽 끝에 있는 금천교禁川轎를 넘어 가면 그동안 연속 입직한 일수는 무효로 처리했다. 금천은 대개 대궐 정문 안쪽에 있는

데 안과 밖,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경계 표시였다.

옛날 규례에는 한양 도성의 문은 파루罷漏에 열고 인정人定에 닫았다. 파루는 새벽 5시에 북을 33번 치고 도성 문을 열어 통행금지를 해제했던 것을 말한다. 인정은 밤 11시에 종을 28번 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승지는 새벽에 대루원待漏院으로 나아가 궁궐의 서쪽 문인 금호문이 열리면 출근했다. 이때 하위 승지부터 금호문으로 들어가는데 뒤늦게 온 승지는 벌을 받았다.

승지는 보통 매일 출근하고 신시申時(오후 3~5시)에 퇴근하며, 승지 2명과 주서 1명이 숙직하도록 규정했다. 승지들의 업무는 정청正廳에 모셔놓은 계자판啓字板 앞에 서열대로 앉아 국왕에게 보고할 각방의 문서와 사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승지 중 가장 아래에 있는 동부승지는 국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나 휴가를 낼 때 상위 승지가 모두 허락해야만 가능했다. 휴가를 내는 사유는 주로 부모님을 뵈러 갈 때나 산소를 살피러 갈 때였다. 병을 치료하려고 온천으로 목욕하러 가는 목욕 휴가는 2품 이상만 할 수 있었고, 침을 맞거나 뜸을 뜨기 위한 침구鍼灸 휴가는 정경 이상만 할 수 있도록 휴가에 차별을 두었다.

2)『승정원일기』를 편찬한 주인공, 주서注書

주서는 정7품의 하위 관료였지만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국왕의 측근으로 인식되었다. 주서의 정원은 조선 전기에는 2명이었다가 선조 때 사변가주서가 추가되었다. 승정원에 입직入直한 주서는 승지의 지휘 아래 매일 국왕에게 올리는 각종 문서를 접수하고, 국왕의 결재에 따라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하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매일 승정원에서 출납하는 모든 문서는 서리가 끈으로 묶어 ‘전교축傳教軸’을 만들었다. 입직 주서는 전교축의 내용을 전부 『승정원일기』에 기록했다.

또한 국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입시入侍 주서의 중요한 임무는 경연이나 상참常參, 제의祭儀나 능행陵行 등에서 국왕과 신료의 언행을 초책草冊에 기록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주서들은 매일 출근하여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입시했다. 초책에 기록한 내용은 당일 함께 입시했던 사관吏官과 대조하여 내용을 수정하게 되고, 이후

『승정원일기』를 작성할 때 활용되었다. 입시 주서는 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겸사관兼史官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승정원일기』는 입직 주서의 전교축과 입시 주서의 초책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었다. 그 외에 승지에게서 자물쇠와 열쇠를 받아 궁궐 문을 여닫는 일을 맡기도 했다. 주서가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가주서假注書를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 사변가주서는 자신의 행차를 비롯해 국청鞠廳과 추국推鞫, 변란과 관계된 문서를 담당했다.

승정원은 창덕궁의 정전正殿인 인정전의 동쪽으로 연영문延英門 안에 위치했다. 인정전의 정문인 인정문에서 동편에 있는 숙장문肅章門을 통과하면 왼쪽으로 연영문이 나온다. 조선시대의 중앙 관서는 모두 도성 안 한양에 있었다. 궁궐 안에 있는 관서는 ‘궐내각사闕內各司’라고 하는데, 궐내각사 중에서 승정원은 국왕을 가까이서 보필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인정전과 선정전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궁궐 바깥에 있는 관서는 궐외각사闕外各司라고 불렸으며 주로 광화문 앞길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상세히 묘사한 『동궐도東闕圖』에는 승정원의 정청으로 생각되는 기와 위에 ‘은대’와 ‘상서성尙書省’이 보인다. 정청의 서북향에 위치한 월랑은 이층의 누각으로 빨간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데, 이곳이 승지들이 올랐던 육선루다. 주서가 근무하는 건물은 정청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뒤’라는 뜻을 지닌 ‘后’자를 써서 ‘당후堂后’라 불렀다. 당후의 동편 방은 한림이 거처하는 곳으로 ‘우사당右史堂’이라 했다. 즉 이 건물은 주서 3명과 한림 1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3) 『승정원일기』의 납입納入과 대서代書

1669년 5월 19일에 우승지 김만기金萬基는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다가 1665년 8월 12일과 13일의 연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날의 입시 주서를 「방직치부房直置簿」를 참고하여 알아보니 가주서 김계광金啓光이었다. 김계광은 3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정원일기』를 납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외에 주서 강석창姜碩昌도 1668년 10월 이후의 『승정원일기』를 7개월이 지났는데 수정하지 않았다. 우승지 김만기는 김계광과 강석창을 모두 무거운 죄로 추고推考할 것을 요청하여 윤허하였으며 현종은 이들

에게 빨리 수정하도록 명하였다.

1677년의 승정원 계사啓辭에서 주서일기의 수납은 석 달을 기한으로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리고 1725년 이후 주서일기는 석 달 내에 수납하는 것이 정식定式이라고 아뢰고 기한을 넘긴 주서를 처벌하는 기사가 발견된다. 1733년 6월 18일에 좌부승지 이종성李宗城은 1733년의 주서의 일기가 수납되지 않은 것이 많고, 1732년 1월 이후의 일기 중에서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은 연설筵說이 많다고 아뢰었다. 심지어는 연설이 누락된 채로 장책한 일기도 있어 해당 주서를 나추拿推하고 수일 내에 수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주서뿐만 아니라 장책할 당시의 승지도 살피지 못한 실수를 책임져야 하니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주서들이 연설을 수납하지 않아 장책하지 못하는 사태는 종종 발생하였고, 해당 주서를 대루청待漏廳으로 나오게 하여 수일 내에 수납하도록 조치하였다. 주서의 일기 수납이 지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주서의 과중한 업무와 짧은 재직 기간에 있었다. 1623년부터 1782년 1월까지 주서의 평균 재직일수는 실주서가 71.8일이며 가주서는 15.9일, 사면가주서는 24.9일로 나타난다. 즉 일기를 수정하는 작업이 주서에서 체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796년 12월 18일에 우승지 이면궁李勉兢은 주서일기의 수납이 지체되자, 매달의 일기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주서가 수정하면 장책한 후에 승지가 고열考閱하고 입계入啓하는 기한을 말일을 넘기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실제 이해 5월 18일의 기사를 보면 정조가 우부승지 정상만鄭尙旼에게 주서일기를 장책했느냐고 묻자, 4월 일기를 이미 장책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정조가 주서일기의 간검看檢과 수납, 장책을 계속 신칙한 결과였다.

주서가 직접 수정해야 하는 일기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는 것을 대서代書 혹은 체서替書·청서倩書라고 한다. 주서일기를 대서한 사례는 1623년에 가주서 김련金璉이 하배下輩에게 일기를 대신 쓰게 한 기사부터 보인다. 입직 주서가 수정하는 상소와 차자는 집안 자제子弟에게 대서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하인에게 대신 쓰게 한 주서를 조사하여 논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 것은 주서 일기를 보통 승정원을 나간 후에 수정하여 납입하기 때문이었다.

1686년 11월에 연설이거나 일기의 수량에 관계없이, 대서시킨 주서를 1680년 1월부터 1686년 7월까지 조사하여 별단別單으로 올렸다. 이 조사로 인해 죄의 경중에 따라 파직하거나 유배지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입시좌목만을 보고 잘못 판단하여 다른 가주서가 대신 근무하였는데 억울하게 처분된 주서도 있었으며, 오래지않아 다시 서용敍用된 경우도 있었다.

1796년 12월 18일에 병조에서 주서일기의 수납 기일이 급박하자 승정원의 배사령陪使令과 병조 서리에게 대서한 사실을 포착하였다. 승정원의 배사령은 자신이 모시는 주서의 서역書役량이 많을 때 병조 서리를 빌려와 대신 쓰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조의 참판과 좌랑은 서리에게 대서를 분부하였다. 주서가 반드시 직접 일기를 수정하는 것이 법례法例인데 서리에게 대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주선한 배사령과 체서를 분부한 병조의 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주서 유원명의 배사령이었던 양경인은 3월부터 8월까지 수행 전후의 일기를 모두 자신이 썼으며, 간혹 서역이 많을 때에는 간간히 병조 서리를 빌려와 대신 쓰게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일기를 체서한 양경인을 포함한 4명의 배사령들은 대명률의 제서를 받들어 시행할 때에 위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근거해 백대의 곤장을 치고 쫓아내는 벌을 내렸다. 그리고 해당 주서는 잡아들여 심문하고 병조참판은 파직하고 좌랑은 또한 파직하고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표 1〉 1796년 『승정원일기』의 대서代書 내역

해당 연월	주서(가주서)	배사령	분부 병조 좌랑	체서 병조 서리	비고
1796. 12.	(李弘謙)	崔好成	趙台榮	韓祐文	3일 替書
1796. 3. ~ 8.	柳遠鳴	楊景仁	.	.	배사령 替書
1796. 9. ~ 12.	"	金民秀	李海清	金景祿	
1796. 7.	(曹錫中)	朴宗植	李海清	吳世豐	
.	"	.	"	白智煥	
.	柳遠鳴	.	參判 尹弼秉	韓祐文	

1816년 8월 24일에 도승지 박종훈朴宗薰은 『승정원일기』에 대해 등록謄錄의 체제를 갖추어 사책史策으로의 쓰임까지 겸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록물임을 아뢰었다. 박종훈 역시 근래에는 주서들이 일기의 수납을 고역으로 여겨 정성을 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남을 시켜서 무성의하게 베껴 내거나, 기한이 지나도 수납하지 않은 세태를 한탄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한 것이 드러나면 엄하게 죄를 내리고 일기를 수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기사는 1796년에 승정원의 배사령이나 병조 서리에게 일기를 대신 쓰게 한 것이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 당시의 세태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현전하는 『승정원일기』 중에 주서의 글씨가 아닌 집안 자제나 승정원 하인, 병조 서리의 필체로 기록한 일기가 존재할 가능성성이 있다.

3. 『승정원일기』의 관리와 방직房直

1) 『승정원일기』의 위계와 관리 실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일지라도 주체가 되는 대상의 위상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조선시대에 기록물을 특정한 곳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개념으로 봉안奉安과 장치藏置가 있다. 봉안은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반들어 안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장치는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수장하여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실록은 봉안 의례를 거행하여 사각史閣에 봉안하지만, 승정원의 업무일지에 해당하는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루상고樓上庫에 장치되었다. 사각에 봉안된 실록은 봉심과 포쇄, 사각의 수리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사안에 따라 형지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그에 비해 『승정원일기』는 누상고에 방치되어 습기가 차도 포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항상 실록과 대비하여 『승정원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리 체계는 미흡했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692년에 우승지 심중량沈仲良은 『승정원일기』를 비록 사고에 봉안하여 비장秘藏하

는 실록과는 차이가 있으나 실로 등한히 할 문서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1724년에 행도승지 이만손李萬巽은 『승정원일기』를 실록과 비교하면 비록 경중의 구분은 있지만, 시정時政의 모든 것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1746년에 영조가 『승정원일기』는 실록보다 상세하여 선왕의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조선시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승정원일기』에 대해 당대 사람들은 예전의 제도나 고사에 관해 참고할 문헌으로 『승정원일기』보다 요긴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승정원일기』의 위계에도 불구하고 누상고에 수장한 『승정원일기』를 관리할 직과職窯를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92년에 우승지 심중량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승정원일기』는 방직房直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루상고에 흘어져 있고 임의로 출입하니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이어移御할 때마다 빈 가마니에 담아 운반하니 『승정원일기』의 위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가 훼손되고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년 일기를 자물쇠가 있는 켐에 넣어 보관해 두는 것이 『승정원일기』의 위상에 합당하다고 아뢰었다.

1724년 윤4월에 2천권 정도의 『승정원일기』는 누상고의 습기 찬 곳에 보관되어 훼손된 2백 여 권의 보수와 개장改粧이 시급한 상태였다. 『승정원일기』는 예로부터 관리를 전담할 관원이 없어 승정원의 예배隸輩들이 마음대로 베껴내는 폐단이 있었다. 행도승지 이만손은 훼손된 『승정원일기』의 일시적인 보수도 중요하지만 수장고의 기본 시설이 없는 누상고에 주목하였다. 그는 사변가주서의 감독 하에 책이나 책장 중에서 누상고에 편리한 것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주서가 누상고의 출입과 봉쇄를 담당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1735년에 9월에 주서 남태기南泰耆는 훼손되어 내용을 읽을 수 없는 150권의 『승정원일기』를 전례대로 사변가주서가 감독하여 수정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도록 아뢰었다. 1800년에도 우승지 홍락유洪樂游가 『승정원일기』의 책의가 거의 훼손되었으므로 개장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2) 방직의 업무와 『승정원일기』의 장책 粧冊

『승정원일기』의 책배冊背에는 방직房直과 책장冊匠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책장은 장책장粧冊匠을 지칭하는 것으로 책의冊衣를 입혀 책을 묶는 장인이다. 따라서 책배에 있는 책장은 해당 『승정원일기』를 장책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직房直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책배에 기록되었을까.

1742년 1월 5일에 행도승지 윤득화는 1636년 12월의 일기가 절반이 불타버린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인을 조사해보았으나 어느 때 불탄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방직에게 물어 처벌하였다. 그는 병자년의 일기가 평상시의 일기와는 다르므로 남한행궁에 있는 『병자일기』를 가져와 주서가 1건을 베껴 낼 것을 제안하였다.

1746년에 설치한 일기청日記廳의 당상이었던 이철보李喆輔는 1744년 당시 화재가 났을 때 방직이 수직하였다면 한 두 권이라도 건질 수 있었는데, 방직이 나가서 자기 집에서 갔기 때문에 지키는 이가 없어 일기가 전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방직을 무거운 처벌로 처리하여 후일을 징계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기사를 통해 방직이 승정원에 숙직하면서 『승정원일기』를 간수하는 것이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방직이 승정원에 숙직하며 업무를 보았던 사실은 장계狀啓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1629년 5월 19일에 승정원의 낮 업무가 끝난 후에 동래부사의 장계가 올라왔다. 그 때 근무 중이던 방직이 장계와 함께 올라온 왜서倭書를 풀다가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에 승정원으로 장계가 들어오면 방직이 묶어 놓은 것을 열어보는 것이 규례라고 하였다.

1641년 5월 25일에는 간밤에 심양에서 온 시급한 장계가 다음날 아침에야 동부승지 윤득열尹得說에게 전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윤득열은 장계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지체되었는지 아뢰면서 방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통 장계가 밤중에 승정원에 도착하면 방직사령房直使令은 서리에게 전해주고 서리는 승지에게 이 사실을 고하는 것이 규례라는 것이다.

1735년에는 좌의정이 올린 사직 단자에 대한 비답이 승정원에 내려진 후에 좌의정



〈그림 1〉 1722년 1월·2월·3월, 『승정원일기』의 책배 기록

의 사직 단자를 의정부 서리가 본가에 전달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승정원에 내려온 사직 단자를 승정원 서리가 의정부 기별서리奇別書吏에게 내주었고, 기별서리가 좌의정의 집으로 갖다 준 것이었다. 이 논의에서 우부승지 홍성보洪聖輔와 가주서 유언국俞彦國은 대신의 사직 단자가 승정원으로 내려온 뒤에는 방직의 방에 두는 것이 규례라고 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방직은 승정원의 문서를 수발하는 방을 지키는 직책이며 사령이 이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승정원의 문서 수발은 일차적으로 방직이 맡아 서리에게 전달하면 서리가 승지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책배에 기록된 방직은 승정원의 문서 수발을 담당했던 방직사령인 것이다.

3) 『승정원일기』의 개수와 개장에 관한 이야기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을 겪고 영조대와 고종대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많은 양을 잃어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소실된 『승정원일기』의 내

용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개수改修’라고 한다. 현전하는 3243책의 『승정원일기』는 보통 288년간 하루 단위로 기록하여 한 달에 한 책 또는 두 책으로 묶은 형태다.

1744년에 창덕궁 인정문에 화재가 일어나 1624년(인조 2)부터 1721년(경종 1)까지 일기가 모두 소실되었다. 1746년에 영조는 『승정원일기』의 개수를 담당할 임시 관청인 ‘일기청日記廳’을 설치하여, 1747년 11월에 서사書寫 작업을 완료했다. 이때 소실된 일기를 개수하기 위해서 조보·각사등록·춘방일기·홍문관일기·인조실록·심양일기와 타다 남은 『승정원일기』를 참고했다. 또한 전국 각처에 수소문하여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 개수한 『승정원일기』는 한 달을 한 책으로 묶기도 했고, 다섯 달 분량을 한 책으로 묶은 것도 있다. 이런 현상은 소실된 『승정원일기』를 개수하는 과정에서 본래 분량보다 내용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조 연간부터는 보통 한 달의 일기를 한 책으로 묶었으며, 분량이 많으면 보름을 기준으로 ‘망전望前’과 ‘망후望後’로 나누어 두 책으로 묶기도 했다.

1888년 3월에 주서와 한림의 거처인 당후와 우사당에 불이 나 1851년(철종 2)부터 1888년(고종 25) 2월까지의 『승정원일기』가 소실되었다. 1889년(고종 26)에 일기청을 설치하여, 1890년(고종 27) 12월에 『승정원일기』를 쓰는 작업을 마쳤다. 두 번째 개수에서는 『일성록日省錄』을 비롯해 『내각일력內閣日曆』『각사등록各司贍錄』 등에 근거하여 참고 할 만한 각 문서를 베껴 내었다. 이것을 반대로 유추해보면 각 문서에는 『승정원일기』를 편찬할 때 바탕이 되었던 전교축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각 관서의 낭청은 승정원으로 가서, 전교축에서 해당 관서와 관계되는 사항을 베껴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개수는 필요한 참고 자료를 수소문하는 일 없이 진행되었다.

현전하는 『승정원일기』의 역사를 밝힐 때 『승정원일기』의 개수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장改粧이다. 개장이란 『승정원일기』의 낡은 표지를 새옷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듯이, 책도 몸체에 해당되는 책지冊紙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힌다. 그 옷을 책의冊衣라고 하는데 『승정원일기』는 삼베로 옷을 입

혔다. 『승정원일기』 외에 삼베 책의로 된 기록물로는 관서에 나누어 보관하는 의궤가 있다.

『승정원일기』의 책의에는 해당 시기와 함께 중앙에 ‘승정원상承政院上’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승정원에 보관’한다는 뜻이다. 처음 『승정원일기』를 편찬할 때 입혔던 책의가 세월이 지나 훼손되면 책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책의를 개장해주어야 책지까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전하는 『승정원일기』의 책의에는 두 차례 개장했던 간지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책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쓴 ‘신축개장辛丑改粧’과 ‘정미개장丁未改粧’이 그것이다. 개장한 책들을 대상으로 간지를 유추해보면 신축년은 1841년, 정미년은 1907년이다.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기록물인 『승정원일기』는 현재 책의에서 두 차례의 개수와 개장을 확인할 수 있다.

4. 『승정원일기』의 특징과 가치

1) 『승정원일기』의 본문 구성

주서가 매일 기록한 『승정원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일자와 날씨, 좌목, 국왕의 위치와 상참과 경연의 시행 여부를 기재한 부분이다. 일기 첫 줄에 연호와 세차歲次, 월일과 일진日辰을 적고, 이어 ‘청晴·음陰·우雨’와 같은 날씨를 입직 주서가 궁궐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기록했다.

둘째 줄부터는 도승지로 시작하여 서열대로 한 줄에 승지 한 명씩 이름을 적었고, 주서와 가주서·사변가주서의 이름은 승지 아래에 기록했다. 근무자들의 이름 아래에는 근무 상황을 ‘좌坐·좌직坐直·식가式暇·재외在外·미차未差’로 써놓았다. 좌는 근무, 좌직은 근무이면서 숙직, 식가는 휴가, 재외는 도성 밖으로 나가서 승정원에 없는 것이다. 미차는 해당 관직에 관원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음을 뜻한다. 주서가 근무하거나, 근무이면서 숙직하는 것은 ‘사仕·사직仕直’으로 적었다. 이것은 주서가 450일(15개월)을 근무하면 6품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근무 일수를 ‘사’로 표현한 것이다.

여덟 번째 줄에는 ‘국왕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항상 ‘上在○○○’으로 적었다. 그 아래에는 경연과 상참의 시행 여부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승지가 전날 국왕에게 아뢰어 결정된 사항이다.

두 번째는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베껴놓은 부분이다. 이 문서들은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사啓辭와 국왕이 승정원에 내린 전교傳敎, 중앙 관서에서 국왕에게 올린 초기草記와 상소上疏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는 국왕이 신료와 접견하는 자리나 국왕이 참석한 의례 등에서 국왕과 신료의 언행을 적은 부분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어서 기록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장에서 다시 세차와 월일, 시간을 적어 시작하고 있다. 둘째 줄에서는 장소를 먼저 기록하고, 참석자를 열거한 뒤 언행을 서술했다. 이와 같이 『승정원일기』는 당일 승정원의 당후에서 근무했던 주서가 기록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 입시 주서가 현장에서 초책에 작성했던 내용에 해당되는 세 번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도세자와 정조의 효심

『승정원일기』에는 1776년에 정조가 상소를 올려 『승정원일기』의 일정 부분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 사연이 있다.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는 영조를 대신하여 국정을 맡고 있었다. 정조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사도세자의 임오화변壬午禍變에 대해 언급하며 왕세손의 지위를 거두어달라고 상소했다. 즉 깊은 산속에 비밀히 보존하여 국왕도 열람할 수 없었던 실록에 비해, 『승정원일기』는 열람하는 모든 사람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아비의 죽음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백관을 대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왕세손의 상소를 읽은 영조는 임오화변이 이미 실록에 수록되었으니 『승정원일기』의 해당 부분을 세초하라고 명하였다. 본래 세초란 실록을 완성한 뒤에 실록 초본草本을 창의문 밖 차일암으로 가져가, 물에 담가 먹의 흔적을 씻어내 호조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실록 외에도 국왕의 어휘가 있거나 국가 기밀 사안 등이 기록된 종이를 휴지로 재사용하지 않고 세초한 사례가 종종 있다. 세초를 거행한 후 정조의 효

심에 감동한 영조는 집경당集慶堂에서 왕세손에게 은으로 만든 ‘효손孝孫’이라는 인장과 유서諭書를 내려주었다. 정조를 상징했던 유서와 은인은 정조가 조회나 거동할 때에 항상 앞에 배치하여 세웠다.

이 일로 인해 『승정원일기』에서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한 기록은 사라지게 되었다.

3) 조선시대 문화 콘텐츠의 보고

팩션faction 영화는 역사적 사실fact에 근거하여 영화적 상상력fiction을 결합한 장르다. 근래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 「변호인」, 「역린」, 「명랑」, 「암살」은 대부분 팩션 영화다. 팩션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영화적 재구성만 갖춘다면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이다.

그 중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숨길 수 있는 일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는 『광해군일기』의 기사를 모티브로, 15일간의 사라진 『승정원일기』에 착안하여 광해군의 행적을 절묘하게 엮어낸 팩션 사극이다. 광해군을 대신하여 궁으로 들어온 광대 하선이 왕으로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돌보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도승지와 호위무사는 심복하게 된다. 관객들은 실제 역사와는 별개로 허구조차도 사실로 믿어 버리며 영화를 즐기게 된다.

그래도 알면 좋을 역사의 진실은 도승지 허균(1569~1618)이다. 영화에서 허균은 1616년에 도승지로 등장하지만 사실 허균은 도승지를 지낸 적이 없다. 허균은 1617년 좌참찬左參贊이 되어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1618년에 역적 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능지처참을 당했다. 또한 실록이 완성되면 편찬에 참고했던 『승정원일기』를 승정원으로 반환하는 것이 보통의 예이다. 광해군 재위 기간의 『승정원일기』는 1634년(인조 12) 『광해군일기』의 편찬을 마친 뒤에 승정원에 보관하지 않고 차일암으로 가져가 세초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과학·문화와 관련된 수많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조선시대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2015

년 말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승정원일기』에 대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DB화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승정원일기』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다. 아무리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라 할지라도, 한자로 기록된 조선시대의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기란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다.

1994년부터 시작된 『승정원일기』 번역은 현재 인조와 순종, 고종 시대를 번역했고, 영조 연간의 반절 정도를 번역한 상태이다. 앞으로 2048년경 『승정원일기』 완역이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정원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가공된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진지한 조선시대를 담고 있는 보물 참고로서 한국학 연구자에겐 여전히 매력적이다.

2강

17·18세기 제주지방 官人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17·18세기 제주지방 官人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1. 머리말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건립된 묘비는 2017년부터 2022년에 걸쳐 제주문화원에서 조사되어 책자로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는 문·무과에 급제하여 육지로 出仕하거나 蔭職으로 제주에서 山馬監牧官을 지낸 官人的 묘비가 다소 확인된다.

필자는 상기 묘비 조사사업을 기획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석문의 대상으로서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건립된 묘비와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사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묘비에 기록된 묘비 주인공의 행적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주인공 관련 행적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상기 두 자료의 가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묘비문 전문을 검토한 뒤 읍지와 사찬 사료에 보이는 주인공의 행적을 살펴보고, 이어서 승정원일기 기사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문문과방목, 왕조실록 등의 사료 또한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건립된 묘비 중 17·18세기 제주 출신 관인의 묘

비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편의상 제주지방 관아 또는 단체에서 편찬한 읍지 및 개인 저술 문헌을 지방 사료, 문무과방목·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중앙에서 편찬한 사료를 중앙 사료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2. 17세기 제주 관인 사례

1) 훈련원첨정 전남

(1) 묘비문

[원문]

○ 전면

禦侮將軍 行 訓練院僉正 田公之墓

○ 후면

① 生于萬曆二十八年庚子八月二十四日 卒于康熙九

② 年庚戌正月二十一日 享年七十一 葬于(魁)邁之原

③ 一男二女

[역문]

만력 28년(1600) 경자 8월 24일 태어나서 강희 9년(1670) 경술 정월 21일에 돌아갔으니 향년 71세이다. (괴)매지원(魁邁之原)에 장사지냈다. 1남 2녀가 있다.

田男(1600~1670)은 담양전씨 제주입도조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남의 묘비에는 후면에 陰記로써 생몰년과 葬地, 생산한 자녀수만을 기록하고, 생전 주인공의 행적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묘비 전면에 碑題로 禦侮將軍 行 訓練院僉正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어 생전 서반 정3품 품계를 지녔고, 훈련원첨정이라는 관직을 지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2) 지방 사료

제주지방에 전하는 읍지류나 기타 개인이 편찬한 사찬 문헌에는 전남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중앙 사료

전남과 관련해서는 『문무과방목』에 무과 급제의 내용과 『승정원일기』에서 1건이 기사가 확인된다.

가. 문무과방목

문무과방목에 의하면 전남은 庚子生으로 1600년(선조 33) 태어났고, 거주지는 濟州로 되어 있다. 忠壯衛로써 1629년(인조 7) 별시에 응시하여 병과 4위에 급제하였다.¹⁾

나. 승정원일기

① 李景曾以備邊司言啓曰 濟州居前主簿田男 色吏寺奴承吉·李賢等 呈狀于本司曰 牧使·判官 以兵亂之後 公私牛畜 盡失無餘 子遺生民 欲耕不得 拮据料理 養牛一百九十四頭 無弊領納 前者 軍物領來者 亦有論賞之典 依例啓處云 本州在海外絕島 本州之人 以官事上來者 與陸地之人 視之頗異 軍器缺物領來者 例爲入啓施賞矣 此人等呈狀希望 果爲猥濫 但許多牛隻 無事押來 及時分送 與軍器領來者 勞苦相同 令該曹遵例論賞 以慰其心 宜當 敢啓 傳曰 依啓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4월 27일)

〈풀이〉 이경중(李景曾)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사는 전(前) 주부(종6품) 전남(田男)과 색리인 시노(寺奴) 승길(承吉)·이현(李賢) 등이 본사에 정장(呈狀)

1) 『문무과방목』, 인조 7년(1629), 별시.

하기를, ‘병란을 겪은 뒤로 관민이 기르던 소를 남김없이 다 잃어버려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경작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목사와 판관이 애써 마련하여 돌보아 기른 소 194두(頭)를 무사히 몰고 와서 바쳤습니다. 지난번 군물(軍物)을 가지고 온 자에게도 논상(論賞)의 은전이 있었으니, 규례대로 입계하여 처리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바다 건너 외딴섬에 자리해 있는데, 본주의 사람이 관사(官事)로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 육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대우가 꽤 후합니다. 군기(軍器) - 원문 빠짐 - 물건을 가지고 온 자를 으레 입계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장하여 원한 것이 과연 외람되기는 하지만 허다한 소를 무사히 끌고 와서 제때에 나누어 주었으니 군기를 가지고 온 자와 노고가 똑같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논상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립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상 문무과방목과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해 전남이 30세가 되는 해인 1629년(인조 7) 무과에 급제하였고, 38세인 1637년(인조 15) 前 主簿로서 進上牛를 몰고가는 책임자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論賞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전남 묘비 비제에 새겨진 직함 훈련원첨정은 이때 제수된 관직 또는 제주 영의 군문에 장기 군무하면서 획득한 관직으로, 실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근무했던 정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과 관련된 승정원일기 기사는 전남 묘비문의 훈련원첨정 직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 획득하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2) 감목관 김사종

(1) 묘비문

[원문]

○ 후면

- ① 公諱嗣宗 字承一 本金寧人也 公於乙卯三月二十五日生 娶韓氏 生四男
- ② 三女 長曰振煜爲宣務郎司贍寺主簿 次曰振煥早死 次曰振爌 次曰振燁 皆
- ③ 爲士人 長女適士人高武臣也 公平生性情順和 人皆稱良 無不景慕 歲在癸
- ④ 卯得拜折衝 戊申除山馬監牧官從仕 丁憂翌年辛亥五月喪室 同
- ⑤ 年十二月 公繼終 明年四月二十二日 合厝于狐村鄉荷院洞 午坐丙向之地
- ⑥ 康熙十一年四月日 副司果 金繼敞書

[역문]

공은 휘 사종(嗣宗), 자 승일(承一), 본관은 김녕(金寧)이다. 공은 을묘년(1615) 3월 25일에 태어나고, 한씨(韓氏)에게 장가들어 4남 3녀를 낳으니, 장남 진욱(振煜)은 선무랑 사첨시 주부이고, 다음 진환(振煥)은 일찍 죽었고, 다음은 진혁(振爌), 다음은 진엽(振燁)이니 모두 사인(士人)이다. 장녀는 사인 고무신(高武臣)에게 장가들었다.

공은 평생 성정(性情)이 순화(順和)하여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칭송하며 경모(景慕)하지 않음이 없었다.

계묘년(1663)에 절충장군의 품계가 내려졌고, 무신년(1668)에 산마감목관에 제수되어 벼슬에 종사하였다.

부모님상을 당한 다음 해 신해년(1671) 5월에 아내의상을 당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공이 이어서 돌아가니, 다음 해(1672) 4월 22일 호촌향(狐村鄉) 하원동(荷院洞) 오좌병향(午坐丙向)으로 합장했다.

강희 11년(1672) 4월 일 부사과 김계창(金繼敞)이 쓴다.

(2) 지방 사료

읍지류 및 기타 개인 사찰 문헌자료에는 김사종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중앙 사료

가. 승정원일기

① 朴世堅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嗣宗 封進馬二匹 來到本寺 故移送內寺 木毛色[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현종 10년 10월 8일조)

▷ 박세견이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주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 산마감목관 김사종(金嗣宗)의 봉진마(封進馬) 2필이 본시(本寺)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문에 내시(內寺)로 이송하면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립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② 崔逸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山馬場監牧官 例以金萬鑑之子孫 差定矣 監牧官 金嗣宗 遭其母喪 故萬鑑子孫中 可合其任者 令濟州牧望報 則其回報內 前判官金大振 爲人勤幹云 令兵曹以金大振 啓下監牧官之任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현종 11년 11월 30일조)

▷ 최일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 산마감목관은 으레 김만일(金萬鑑)의 자손으로 차정(差定)하고 있습니다. 감목관 김사종(金嗣宗)이 그 어미의 상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김만일의 자손 중에 그 직임에 합당한 자를 제주목사로 하여금 망보(望報)하게 하였더니, 그 회보(回報) 안에 전 판관 김대진(金大振)이 사람됨이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김대진을 감목관의 직임을 계하(啓下)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4)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비교

<표 1> 김사종의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행적 비교

연도	묘비문	승정원일기	
1663	拜折衝		-
1668	除山馬監牧官		-
1669		濟州山馬監牧官金嗣宗 封進馬二匹 來到本寺	10월 8일
1670	丁憂	監牧官金嗣宗 遭其母喪	11월 30일

이상 金嗣宗(1615~1671)의 묘비문과 관련 사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김사종 관련 기록으로 지방 사료로 전하는 것은 1건도 확인할 수 없다. 1672년(현종 13) 4월에 세워진 묘비문이 현 제주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이 전부이다.

묘비문에 의하면, 김사종은 1663년(현종 4) 서반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의 품계가 내려졌고, 1668년(현종 9) 산마감목관에 제수되었다. 1670년(현종 11) 부모상을 당한 다음해에 몰하였다.

김사종과 관련한 중앙 사료로서 승정원일기 1669년(현종 10) 10월 8일자에 김사종이 산마감목관으로서 조정에 진상해야 할 봉진마 2필이 사복시에 도착하였음을 보고하는 기사는 묘비문에 1668년 산마감목관에 제수된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1670년 11월 30일자 기사에 김사종이 어머니상을 당해 산마감목관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김만일의 제4자인 김대진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묘비문에 부모상을 뜻하는 ‘丁憂’의 내용과 일치한다. 여기에서 부모상은 곧 어머니상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김사종의 묘비문과 승정원일기의 내용은 상호보완하면서 지방 사료에는 전하지 않는 산마감목관 김사종의 행적을 보다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3) 흥덕현감 김반

(1) 묘비문

[원문]

○ 전면

通政大夫 行 興德縣監 金公之墓

○ 후면

① 公諱璠 本金寧 曾祖諱(利)弘 贈資憲大夫工曹判書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
(府)

② 都摠管 祖諱萬鑑 崇政大夫 行知中樞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考諱大(吉)××

③ 夫知中樞府事行嘉善大夫監牧官妣淑夫人康氏公以崇(禎)己巳閏四月初三日生×××(壬)
④ 辰登科○○○○○○○○○○乙巳除臨淄僉使丁未○××壬子陞堂上乙卯拜×××
⑤ 事丙辰除興德縣監丁巳遞歸戊(寅)××二十九日○終于正寢享年七十翌年己卯×××
⑥ ××必×田壬坐丙向之原○先兆也公天(資)雄偉器局峻整生長名(閱)世×××××
⑦ ×一如寒士奉親至孝追遠盡誠舉世稱歎××不欽仰(公)(娶)(淑)夫人梁氏鄉××××屬×
⑧ (姿)柔順慈諒婦○○○○生四男三女男長羽遷年二十七登武科歷職內三廳訓鍊×××
⑨ 羽達早世無後次羽遠次羽運女長適文科(監)察金××(次)適金汝重次適察訪鄭希×××
⑩ (諸族)并三十餘人××三十八年己卯三月○××

○ 우연

- ① ×××××××(於)丙寅六月十七日終于丙戌十二月十七(日)××
② ××八十一而××十一月祔葬而乾坐巽向

[역문]

공의 휘는 반(璠), 본은 김녕(金寧)이다. 증조는 휘 이홍(利弘)으로 증 자현대부 공조참판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이다. 할아버지는 휘 만일(萬鑑)로 승정대부 행지 중추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이다. 아버지는 휘 대길로 ××부 지중추부사 행 가선대부 감목관이다. 어머니는 숙부인 강씨(康氏)이다.

공은 승정 기사년(1629) 윤4월 3일에 태어났다. ×××× 임진년(1652) 과거에 급제하여 ○○○○○○○○○○ 을사년(1665)에 임치첨사(臨淄僉使)에 제수되었다. 정미년(1667)에 ×× 임자년(1672)에 당상(堂上)에 올랐다. 을묘년(1675)에 ××××사에 제수되었다. 병진

년(1676)에 흥덕현감에 제수되고 정사년(1677)에 갈리었다. 무인년(1698) ×× 29일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갔다. 향년 70세이다. 다음해인 을묘년(1699) ××××× 필×전(必×田) 임좌병향지원(壬坐丙向之原) 선영에 장사지냈다.

공은 태어난 자질이 씩씩하고 빼어났으며 기량이 준엄하고 단정하였다. 명문 가문에서 생장하였고, 世××××××× 한결같이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어버이를 모심에 지극한 효도로 하였고, 조상을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였고 우러르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숙부인 양씨에게 장가들었다. 鄉××××× 鳥(姿) 유순하고 자애로웠다. 婦 ○○○○ 4남 3녀를 낳았다. 장남 우천(羽遷)은 27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내삼청(內三廳), 훈련×××(訓鍊×××)을 두루 지냈다. 둘째 우규(羽達)는 일찍 세상을 떠나 후가 없다. 셋째 우원(羽遠), 넷째 우운(羽運)이다.

큰딸은 문과 감찰 김××에게 시집갔다. 둘째는 김여중(金汝重)에게 시집갔다. 셋째는 찰방 정희×(鄭希×)에게 시집갔다. ×× 제족(諸族)은 모두 30여 인이다.

×× 38년 ×묘 3월×××

××××××× 병인년(1626) 6월 17일이다. 병술년(1706) 12월 17일 돌아가니 향년 81세이다. ××× 11월 합장하니 건좌손향(乾坐巽向)이다.²⁾

상기 묘비문에서 金磻(1629~1698)의 묘비가 세워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비문이 마멸되어 판독이 불분명한 후면 맨 끝의 “××三十八年己卯三月○××”이다. 여기에서 ××三十八年的 ××는 청나라 聖祖 때의 연호인 康熙로 단정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반의 몰년인 서기 1698년이 강희 37년, 갑자로 戊寅에 해당하고, 이후 청나라 연호에서 38년이 넘는 연호는 乾隆인데 건륭 38년은 간지가 癸巳이기 때문이다. 곧, 김반의 묘비는 김반이 몰한 다음해에 건립되었다.

2) 이 우면의 내용은 1706년에 작고한 부인을 합장하면서 기존 김반의 묘비에 부인의 생몰년과 장사지낸 일자를 기록한 것이다.

(2) 지방 사료

가. 읍지

① 金磻. 大吉之子 武科 官至興德縣監 (이원조, 『탐라지초본』권4, 정의, 과환)

나. 개인 저술

① 孝宗戊戌 萬鑑子大吉及嗣孫礪 又獻馬二百餘頭 放于山場 於是 朝廷以大吉爲
山馬監牧官階六品 特命其子孫世襲其職 自此蔭仕不絕 曰大鳴官至寶城郡守 大
吉之兄也 曰磻官至興德縣監 大吉之子也 (김석익, 「탐라인물고」, 김만일)

(3) 중앙 사료

가. 승정원일기

① 吏批啓曰 …… 金磻爲臨淄僉使 …… 『承政院日記』顯宗 6年 8月 15日條)

② 下直 臨淄僉使金磻 『承政院日記』顯宗 6年 9月 1日條)

③ 謝恩 僉知金磻 『承政院日記』肅宗 1年 11月 26日條)

④ 吏批 …… 金磻爲德興縣監 …… 『承政院日記』肅宗 1年 12月 26日條)

⑤ 謝恩 …… 興德縣監金磻 …… 『承政院日記』肅宗 1年 12月 29日條)

⑥ 下直 …… 興德縣監金磻 『承政院日記』肅宗 2年 1月 20日條)

⑦ 傳曰 …… 縣監金磻 …… 職牒還給 …… 『承政院日記』肅宗 3年 12月 2日條)

⑧ 兵批 …… 金磻 …… 爲副司果 『承政院日記』肅宗 4年 3月 27일條)

(4)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비교

〈표 2〉 김반의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행적 비교

연대		묘비문	승정원일기	
壬辰	1652	登科		
乙巳	1665	除臨淄僉使	吏批啓曰, …… 金磻爲臨淄僉使, ……	8월 15일
			下直, 臨淄僉使金磻	9월 1일
丁未	1667	○xx		
壬子	1672	陞堂上		
乙卯	1675	拜xxxx事	謝恩, 僉知金磻	11월 26일
			吏批, …… 金磻爲德興縣監 ……	12월 26일
			謝恩, …… 興德縣監金磻……	12월 29일
丙辰	1676	除興德縣監	下直, …… 興德縣監金磻	1월 20일
丁巳	1677	遞歸	傳曰, …… 縣監金磻……職牒還給	12월 2일
	1678		兵批, 以……金磻……爲副護軍	3월 27일

이상 金磻(1629~1698)의 묘비문과 관련 사료를 살펴보았다. 먼저 묘비문에 나타난 김반의 행적을 요약하면, 김반은 1629년(광해군 21) 윤4월 3일에 태어나서 24세가 되는 1652년(효종 3) 과거에 급제하였다. 37세인 1665년(현종 6) 臨淄僉使에 제수되었고, 44세인 1672년(현종 13)에 통정대부로 품계가 당상관에 올랐다. 48세인 1676년(숙종 2) 興德縣監에 제수되고, 다음해인 1677년에 체임되었다. 1698년(숙종 24) ×월 29일에 졸했다. 여기에서 묘비 전면 글자인 碑題에 흥덕현감 앞에 行자를 쓴 것은 정3품 통정대부로서 종6품 현감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2건의 지방 사료를 통해서는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興德縣監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표 2〉를 통해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확인되는 김반의 행적이 묘비에 기록된 내용과 부합되는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묘비문에 원문이 마멸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1695년 ‘拜xxxx事’가 ‘拜僉知中樞府事’임이 승정원일

기 기사에서 의거하여 확증할 수 있고, 이는 1672년 당상의 품계에 먼저 오른 뒤 3년이 지난 뒤 받은 실직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묘비문에 기록된 1665년 김반의 임치첨사 제수에 대해서는 지방 사료에서는 기록이 없는데,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임명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678년 부호군 제수에 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 기사에서만 확인된다.

김반의 기록을 통해서도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가 김반의 행적 고찰에 있어 상호보완적이면서 구체적인 일자 등에 있어서는 승정원일기 기사가 보다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균관전적 김계창

(1) 묘비문

[원문]

○ 전면

通訓大夫 行成均館典籍 金公之墓

○ 후면

- ① 公×…× 移居于濟州 媵于此地
- ② ×…×文科 官至成均典籍 公生於丁丑正月二十五日 年至廿七 娶于贈
- ③ ×…×四男二女 而×…× 長妻(于)武士高重昌女 次妻
- ④ ×…× 長女適于(士)人×…× 次女適于將官高俊(臣) 公生平性
- ⑤ ×…× 卒于己卯八月十二日 (迨)年六十三 同年十一月廿
- ⑥ 七日 ×…×

[역문]

공은 ×…× 제주에 옮겨 살았고, 媵于此地 ×…× 문과급제하여 관직이 성균관 전적에 이르렀다.

공은 정축년(1637) 정월 25일에 태어났다. 27세에 贈×…×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다. 而×…× 장자는 무사 고중창(高重昌)의 딸에게 장가갔고, 다음은 ×…×. 장녀는 사인 ×…× 차녀는 장관 고준(신)(高俊(臣))에게 시집갔다.

공은 평생 성품이 ×…×. 기묘년(1699) 8월 12일에 돌아가니, 향년 63세이다. 같은 해 11월 27일 ×…×

金繼敞(1637~1699)의 묘비는 묘비문에 자녀의 혼인 관계만 기록되었고, 손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몰한 직후 또는 몰 후 수년 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방 사료

가. 읍지

- ① 金繼敞. 文科官至典籍 (이원조, 『탐라지초본』 권2, 제주, 과환)
- ② 金繼敞. 顯宗朝에 文科로 官이 典籍에 至하다. (담수계, 『증보탐라지』 인물, 과환)
- ③ 金繼敞. 以能文으로 稱이라. (담수계, 『증보탐라지』 인물, 문학)

나. 개인 저술

- ① 辛亥 十二年 春 瘦疫大熾 別遣慰諭御史李夏來 試取 文科 賦金繼隆金繼敞二人 (김석익, 『탐라기년』 권3, 1671년조)

(3) 중앙사료

가. 문과방목

『국조문과방목』에 김계창은 1672년(현종 13) 별시에 병과 17위로 합격했다.³⁾

3)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卷之十二(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나. 현종실록

① 賦濟州儒生金繼隆 金繼敞直赴殿試 李夏試取而來 入格者只此二人 故有是命
(『현종실록』 현종 12년 12월 30일조)

다. 승정원일기

① 今文科直赴金繼隆·繼敞等 …… 傳曰 亦爲許赴於別試殿試 可也 (『승정원일기』
현종 13년 10월 14일조)
② 金繼敞爲典籍 (『승정원일기』 숙종 2년 1월 27일조)

(4)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비교

〈표 3〉 김계창의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행적 비교

묘비문			승정원일기
연도	이력	연월일	내용
미상	文科		
		1672년 10월 14일	今文科直赴金繼隆·繼敞等 …… 爲許赴於別試殿試 可也
미상	官至成均典籍	1676년 1월 27일	1676년 1월 27일

이상 金繼敞(1637~1699)의 묘비문과 관련 사료를 살펴보았다. 묘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김계창의 생전 이력은 생몰년 외에 문과 급제 후 벼슬이 성균관전적에 이르렀다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지방사료에 있어 읍지에 기술된 행적 또한 묘비문에서처럼 내용이 소략하다. 다만, 개인 저술인 『탐라기년』에 문과 급제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혀놓았다. 이 내용은 『현종실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기사와 비교해 보면, 먼저 승정원일기에서는 탐라기년과 실록에 기술된 김계창의 直赴殿試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시에 가서 시험을 본 일시를 암시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기사에 의거한다면 김계창의 전시에 시험을 치른 일자는 1672년 10월 14일 이후여야 한다. 임금이 직부전시하도록 한 김계룡과 김계창을 별시전시에 許赴

한 시점이 10월 14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종실록 13년 10월 21일자에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別試殿試 文科取柳命天等二十一人【內居末二人 濟州製述直赴】武科取朴廷元等五百十三人

위 실록의 기사에서 21인 중 2인이 제주에서 제술에서 직부한 자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김계룡·계창 형제인 것은 분명하다. 본 승정원일기 기사는 읍지와 실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김계창이 실제 문과에 급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묘비문과 읍지에 기술된 성균관전적 경력에 대해 제수한 날짜를 명시하여 김계창이 문과 급제 후 4년 뒤 40세가 되는 1676년(숙종 2)에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3. 18세기 제주 관인 사례

1) 예조좌랑 오정빈

(1) 묘비문

[원문]

○ 전면

承訓郎 行禮曹佐郎 吳公 宜人 姜氏之墓

○ 전면 좌측

公諱廷賓 字興叔 系出軍威 學生諱德立之孫 學生諱睨之子 榮將諱碩賢之八代孫
也

○ 전면 우측

① 公之妻宜人姜氏 系出土族家 節操超倫 人皆觀感 共稱曰女中君子 噫 卒于公後
三十四年

② 甲子九月二十八日 壽八十四歲 同年十二月二十二日 祔葬于左焉 幼學高得泰
書

○ 우면

① (而)典籍高弘進 卽其外祖也 學生公 氣英魁偉 有出×穎特之志 喜公有奇異 自
學語時

② 出×××× 其有成中 留守鉉之留島也 挾往請教 則留守感其殷勤 獎與之以誠

○ 후면

① 文才果蔚然夙成 丁卯以詩中司馬 丙戌以賦參丙科 錄成均 以堂后 累入前席 昧
侍天顏 遠

② 近榮之 岷拜南宮員外 旋受萬頃縣令 其爲政之清謹 吏民之愛戴 雖在千載之下
可見其口碑

③ 矣 噫 此豈非公之穎達 而亦豈非學生公之出人勸誨也耶 公有至行 事親盡孝 友
愛甚篤 其在稚

④ 少 與弟廷臣 離家同學 弟或呼飢 公必與之共泣 已已遭外艱 葬祭稱禮 孤露之
感 久而益新

⑤ 及至登科榮歸之日 涕泗交頤 見者感動 榮貴之後 常以離遠庭闈 不樂仕宦 決欲
趁春投紱解歸

⑥ 宿計未遂 朝(露)先晞 痛矣 以公之孝悌雅行 遽至於此耶 公生於癸卯 終於辛卯
葬於先×××之原

⑦ 乃同年三月二十四日也 (噫) 公間世而傑出于島中 天之所以賦(異)××××
何×××××悲

⑧ 夫聞公之喪 行路莫不惜 其無年 哀其有親也 噫乎 情之所在 死生(無)間 公×(沒)
而×××××(必)不

⑨ 一日而忘大夫人 夫以大夫人之鍾愛(參) 何忍以死而傷生 以重憚九原之心乎 吾

(請)以(斯)(語)寬慰大夫人

⑩ 而且以慰吾公焉 公娶晋州姜斗煥之女 無子 以廷臣子命夔爲後 而娶士人梁巘

之女 生一女一男皆幼

⑪ (余)方以(謫)(民)爲世擯斥 顧何敢擬於立言君子 以賁公之墓道 以吾知公之最
故公弟之請甚切 終不忍辭也 完山 李

⑫ 聖輝記

○ 좌면

崇禎後甲申八年辛卯 外從姪 從仕郎行成均館學諭 高萬瞻泣(書)

[역문]

공은 휘 정빈(廷賓), 자 흥숙(興叔), 본관은 군위(軍威)이다. 학생 휘 덕립(德立)의 손자
이고, 학생 휘 현(覲)의 아들이며, 영장(榮將) 휘 석현(碩賢)의 8대손이다. 그리고 전적(典
籍) 고홍진(高弘進)은 곧 그의 외조부이다.

학생공(學生公. 吳覲)은 기색이 빼어나고 체격이 장대하고 훈칠하였으며 뛰어난 뜻이
있었는데, 공에게 기이함이 있어 말을 배울 때부터 … 함을 기뻐하였다. 공이 자라는
가운데 유수(留守) 신임(申錦)이 섬(제주)에 와서 머물렀는데, (공을) 데리고 가서 가르침을
청하니 유수가 그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에 감동하여 정성으로 장려하며 가르쳤다.

글재주가 과연 성대하게 일찍 이루어졌으니 정묘년(1687)에 시(詩)로써 사마시에 합
격하였고, 병술년(1706)에는 부(賦)로써 병과(丙科) 과거시험을 보아 성균관에 들어가고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로 여러 번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니 멀
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가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

이어서 예조 좌랑(禮曹佐郎)을 정원 외로 제수 받고, 곧이어 만경 현령(萬頃縣令)에 제
수되었다. 그 정사가 청렴하고 조심스러웠으니 아전과 백성들이 사랑하고 떠받드는 것
이 천년이 지날지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 이 어
찌 공이 빼어나고 통달한 때문이 아니며, 또한 어찌 학생공이 출중하게 권면하고 깨우
친 때문이 아니겠는가?

공은 지극한 행실이 있어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를 다했고 형제간의 우애가 심히 돈

독하였으니, 어렸을 적에 동생 정신(廷臣)과 집을 떠나 함께 공부할 때 동생이 혹 배고프다고 말하면 공은 반드시 동생과 더불어 함께 울었다.

기사년(1689)에 아버지의상을 당해서는 장례와 제사를 예의에 맞게 하고 아버지를 여원 외로운 감정을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하였다. 과거에 급제해서 영광을 어버이에게 돌리는 날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양뺨에 흘러내리니 보는 이들이 감동하였다.

지체가 높고 귀하게 된 후에는 항상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기에 벼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봄이 되면 인근을 던져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려 결심했지만 묵혀두었던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침이슬이 마르듯 먼저 돌아가 버렸으니 애통하다. 공의 효도와 우애, 고아한 행동 때문에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가?

공은 계묘년(1663)에 태어나서 신묘년(1711)에 돌아가 ○○○에 장사지내니 곧 같은 해 3월 24일이다.

아! 공은 섬안에서 세상에 아주 드물게 태어나는 걸출한 인물로 하늘이 준 슬프다. 공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길 가던 사람들은 그짧은 수명을 아까워하며 그 남겨진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이 없었다.

아! 정(情)이 있는 곳은 삶과 죽음에 차이가 없는 것이니 하루라도 대부인(大夫人)을 잊지 않을 것이다. 대부인이 아들을 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 차마 죽음으로써 생명을 상하게 하여 저승에 있는 이의 마음을 거듭 슬프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청하여 대부인을 널리 위로하고 또한 우리 공을 위로한다.

공은 진주 강두환(姜斗煥)의 딸에게 장가들었지만 아들이 없어 정신의 아들 명기(命夔)로 후를 삼았다. 그리고 사인(士人) 양현(梁峴)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 1남을 낳으니 모두 어리다.

나는 유배 온 백성으로 세상에서 내침을 당했으니, 돌아보건대 어찌 감히 입언군자(立言君子)에 헤아려져 공의 묘도를 꾸밀 수 있겠는가? 내가 공을 앓아 최고라 하여 공의 아우의 요청이 간절하였다. 끝내 차마 사양하지 못하였다. 완산 이성휘가 기록하다.

승정후 갑신 8년 신묘(1711) 외종질 종사랑 행성균관학유 고만첨이 울며 쓰다.

○ 전면 우측

공의 처 의인 강씨는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태어나 절개와 지조가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보고 느끼며 다함께 일컫기를, “여중군자(女中君子)”라 하였다. 아! 공이 돌아가신 후 34년 후인 갑자년(1744) 9월 28일에 졸하였으니 장수하여 84세를 살았다. 같은 해 12월 22일 공의 묘역 왼쪽에 합장하였다. 유학 고득태(高得泰)가 쓴다.

(2) 지방 사료

가. 읍지

- ① 草島. 旌義縣人 吳廷賓이 良馬 2匹을 獻하여 牛島에 別養하니 其功으로써 此島를 劃給하였다 云. (담수계, 『증보탐라지』, 지리, 도서)
- ② 字는 興叔이요, 吐坪里人이니 能文으로 稱이라. 肅宗朝에 文科에 登하여 官이 萬頃縣令에 至하다. (담수계, 『증보탐라지』, 인물, 과환)
- ③ 吳廷賓. 以能文으로 稱하고 金春澤이 亦稱山南佳士하다. (담수계, 『증보탐라지』, 인물, 문학)

나. 개인 저술

- ① 秋 遣巡撫御史李海朝來 試取文科 賦鄭敞遠 高萬瞻[初名萬秋] 吳廷賓三人 (김석익, 『탐라기념』권3, 1706년조)
- ② 吳廷賓 本貫軍威人 典籍高弘進外孫 師事金北軒春澤 文行夙成 肅宗 中司馬丙戌登第 歷揚中外 官至萬頃縣令 (김석익, 「탐라인물고」, 오정빈)

(3) 중앙 사료

가. 국조인물고

吳君廷賓 字興叔 其先海州人 鼻祖 高麗檢校軍器監 謂仁裕 中葉有遷之濟州者 文獻無傳焉 世居于濟州旌義縣 幾代至諱某 於君爲高祖 而曾祖諱守幹 祖諱德立 考

諱覲 配同縣人 姓某 諱某女 以顯宗四年癸卯某月某日干支生君 容止嬉遊 異凡兒
吳固東方大姓 島中咸知爲士族也 余於乙卯夏 渡海 從先君子謫所 僥居於大靜縣
村舍 一日有客 率一童卽自東來 投小刺曰 旌義吳某 延之與語 盖海中之豪傑士也
請曰 所生若而人 年今十三歲者 粗能學書史 漠荒中 孤陋甚 冀得以誘掖成材 辭極
懇摯 余辭謝不能得 童卽興叔也 仍留與講課 聰明謹慎 才行俱優 得於家庭之訓養
者然也 力行遊藝 僅五寒暑 藻思日益進 先君子 頗期待名而字之 庚申 君承親旨 航
海北學于京 惡衣食 從余卒業 以詩中丁卯司馬 歸榮二親 某年丁外艱 服闋 留其第
奉偏母而又北遊 京中人士多 知名與交遊 某年還入海 丙戌 朝廷遣繡衣 試文武士
君獻賦 中選賜第 付丁亥別試丙科 隸成均館 例陞學諭學錄學正著作博士 間帶承
政院假注書 出入周旋 記注瞻敏 見詔諸公間 旌義一縣 曾無科甲出身 君實破天荒
而題名蓮榜 珍筆銀臺 創見于君 島人榮之 某年陞典籍承議郎 遷禮曹佐郎 兼春秋
館記事官 數昵侍黼座 庚寅爲養 出宰萬頃 政治練熟 是年冬 邁疾 某月某日卒于官
得年四十八 棺斂皆從官庇 明年春 其弟廷臣 聞訃而來與護喪 官吏扶輶而歸 用某
年某月某日 葬于先山某坐原 嘴呼 君力學成功名 無忝父教 可不謂孝乎 天不假年
中道而闕嗟乎命矣 君娶大靜人姜斗炫女 無子女 取廷臣子爲後 側室有遺腹女生
未幾夭 在島時 廷臣亦頗問字於余屢移書曰 吾兄行績 不忍泯沒無傳 余悲其志 略
記其族姓年甲 歷官終始 以示於後云 (『국조인물고』권31, 문관, 오정빈)

나. 속종실록

① 제주어사(濟州御史) 이해조(李海朝)가 입래(立來)하였다. 예문제학 최석항(崔錫恒)
을 불러서 시권(試券)을 과차(科次)하게 하고, 정창선(鄭敞選)·오정빈(吳廷賓)·고만
첨(高萬瞻) 세 사람에게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 (『속종실록』 속종 33년(1707) 1월
21일)

다. 승정원일기 기사 내용

연번	연도	내용	출전
1	1707	備忘記, 居首幼學鄭敞遠, 之次進士吳廷賓, 幼學高萬瞻, 竝直赴殿試	숙종 33년 1월 21일조
2		禮曹啓曰禮曹啓曰, 今三月十八日晝講入侍時, 直赴殿試之類, 許赴於今番別試殿試事, 榻前定奪矣……濟州試才文科入格, 幼學鄭敞遠, 進士吳廷賓, 幼學高萬瞻等, 曾有直赴殿試之命矣 依榻前定奪, 竝爲許赴於今番別試殿試之意, 敢啓 傳曰, 知道	숙종 33년 3월 18일
3		禮曹啓曰, 濟州試才文科入格幼學鄭敞遠, 進士吳廷賓, 幼學高萬瞻等, 許赴於今別試殿試事, 啓稟蒙允矣 高萬瞻則未及上來云, 許赴後科之意, 敢啓 傳曰, 知道	숙종 33년 3월 25일
4		以李宜顯爲副校理……學諭單吳廷賓	숙종 33년 10월 20일
5	1708	都承旨 金演 坐……仕 吳廷賓 仕直……	숙종 34년 2월 21일
6		假注書鄭夢海出使, 代以吳廷賓爲之	숙종 34년 2월 21일
7		都承旨 金演 坐……仕 吳廷賓 仕直……	숙종 34년 2월 23일
8		都承旨 金演 坐……仕 吳廷賓 仕直……	숙종 34년 2월 23일
9		都承旨 金演 坐……仕 吳廷賓 仕直……	숙종 34년 2월 24일
10		都承旨 金演 坐……仕 吳廷賓 仕直……	숙종 34년 2월 25일
11		以尹世綏爲司諫……吳廷賓爲學正	숙종 34년 2월 25일
12		都承旨 金演 坐……仕 吳廷賓 仕直……	숙종 34년 2월 26일
13		入侍, 承旨權持, 玉堂李世最·宋正明, 假注書吳廷賓, 兼春秋李基聖·尹憲周	숙종 34년 2월 26일
14		都承旨 金演坐……假注書 吳廷賓	숙종 34년 2월 27일
15		都承旨 金演……假注書 吳廷賓洪廷弼……	숙종 34년 2월 28일
16		都承旨 金演坐……假注書 吳廷賓……	숙종 34년 2월 29일
17		入侍, 承旨權持, 玉堂宋正明·沈壽賢, 假注書吳廷賓, 兼春秋李基聖·尹憲周	숙종 34년 2월 29일
18		都承旨 金演……假注書 吳廷賓洪廷弼……	숙종 34년 2월 30일
19		入侍, 承旨南至熏, 玉堂宋正明·沈壽賢, 假注書吳廷賓, 兼春秋金克謙·尹憲周	숙종 34년 2월 30일

연번	연도	내용	출전
20		都承旨 金演……假注書 吳廷賓洪廷弼……	숙종 34년 3월 1일
21		都承旨 金演……假注書 吴廷賓洪廷弼……	숙종 33년 1월 21일조
22		假注書吳廷賓病, 代以鄭雲柱爲之	숙종 34년 3월 3일
23		有政……吳廷賓爲養賢直長	숙종 34년 10월 29일
24	1709	以崔宗周爲兼高山察訪……吳廷賓·池欽單付典籍……	숙종 35년 7월 27일
25		有政.吏批……吳廷賓爲禮曹佐郎	숙종 35년 10월 24일
26		禮曹佐郎吳廷賓, 穆陵松木斫伐事, 出去	숙종 35년 11월 21일
27		禮曹佐郎吳廷賓, 穆陵松木斫伐後, 入來	숙종 35년 11월 22일
28		禮曹佐郎吳廷賓, 朴彭年等六臣祠宇, 賜額致祭後入來	숙종 35년 12월 27일
29	1710	吏批……吳廷賓爲萬頃縣令……	숙종 36년 7월 6일

이상 吳廷賓(1663~1711)의 묘비문과 관련 사료를 살펴보았다. 묘비문을 통해서 추출되는 오정빈의 관직 이력은 1687년(숙종 13) 사마시에 합격하고, 1706년(숙종 32) 문과 급제 후 승정원 주서(정7품)가 되었으며, 이후 관직이 예조좌랑(정6품)을 거쳐 만경현령(종5품)에 이른 것으로 요약된다. 제주지방에서 편찬된 읍지나 개인 저술에 있어서도 내용은 사마시 합격, 문과 급제 후 관직이 만경현령에 이른 것으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중앙사료 중 국조인물고의 오정빈 내용은 申鉉(1639~1725)이 지은 오정빈의 墓表이다. 여기서는 묘비문에 기록된 1706년 문과 급제가 실질적인 급제가 아니라 직부전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07년 별시 급제 후 학유 學諭·學錄·學正·著作·博士로 승진되고, 그 사이에 承政院假注書를 겸임한 사실도 이 묘표에 기록해 두었다. 이후, 전적, 승의랑(정6품 상계)로 승진되었다가 예조 좌랑을 거쳐 1710년(숙종 36) 만경현령으로 나아간 사실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실록의 오정빈 관련기사는 제주어사 이해조가 제주에서 가져온 試券을 科次하게 하여 오정빈 등 세 사람에게 급제를 내려 주었다는 기사 1건이 유일하다. 이

에 비해 승정원일기에서 검색되는 오정빈 관련 기사는 모두 29건이다. 이러한 승정원일기 오정빈 관련기사는 1707년(숙종 33) 1월 21일자로 직부전시를 許赴한 사실, 같은 해 3월 18일자로 별시에 직부전시를 허부한 사실, 이후 1707년 10월부터 1708년 10월까지 학유를 거쳐 가주서, 양현직장을 역임한 사실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709년에서 1710년 전적을 거쳐 예조좌랑, 만경현령에 이르는 이력을 기록하면서 예조좌랑으로서 穀陵松木斫伐과 朴彭年等六臣祠宇, 賜額致祭한 일들도 기록하고 있다.

2) 벽사도찰방 김남현

(1) 묘비문

[원문]

○ 전면

通訓大夫 行 碧沙都察訪 金公之墓

○ 후면

- ① 公諱南獻 本金寧 考諱羽遷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祖諱璠 通政大夫
- ② 行興德縣監 曾祖諱大吉 贈資憲大夫知中樞府事行嘉善大夫
- ③ 監牧官 姮淑夫人梁氏 鄉大夫諱柱天之女 公生康熙丙辰九月初九日 幼而
- ④ 岐巍 氣質異凡 年三十一 由水山萬戶 登丙戌武科 四代決科 世所罕有 薦入
- ⑤ 內三廳 守門將宣傳官 甲辰除碧沙都察訪 ○謹律己 治聲藹蔚 連置○
- ⑥ 考 人皆稱頌 丙午冬 先公捐館 公(承)訃奔還 哀毀過節 纔經襄事 病益(沈)重 以
歲雍正
- ⑦ 丁未二月二十三日 易簣(中)(廬) (故)壽五十二 四月二十八日 葬于獨木洞乾坐
巽向之原 公天資雄
- ⑧ 偉 器度峻(榮) 孝友睦婣 爲正家之本 ○明仁恕 爲居官之法 遠近長服 莫不欽仰
公娶

- ⑨ 品官梁之叟之女 只生一女 適士人金徹明 有雋才 生三男一女 公有(孽)四男一女 長河源生二男
- ⑩ 次世範生二女 次世澄 次世衡 公葬之後 先夫人 以碧沙公大宗奉祀之人 旣無嫡嗣 則擇取諸
- ⑪ 媞中立 後所在不已 廣收衆論 取堂姪鎮○ 禮曹及本州受立案 以續察訪之後 莫重
- ⑫ 宗祀 賴不墜絕 亦云 ○○而惜乎 以公之德 不幸遐壽 亦無嗣續 天道冥冥 難可恃也 嘴呼哀哉

[역문]

공은 휘 남현(南獻), 본 김녕(金寧)이다. 아버지는 휘 우천(羽遷)으로 절충장군 행 용양 위부호군이다. 할아버지는 휘 반(璠)으로 통정대부 행 흥덕현감이다. 증조는 휘 대길(大吉)로 증 자현대부 지중추부사 행가선대부 감목관이다. 어머니는 숙부인 양씨로 향대부 주천(柱天)의 딸이다.

공은 강희 병진년(1676) 9월 9일에 태어났다. 어려서 자질이 빼어났고, 기질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 31세에 수산 만호(水山萬戶)를 거쳐 병술년(1706) 무과에 급제하였다. 4 대가 과거에 합격하였으니 세상이 드문 일이다.

내삼청(內三廳)에 추천되어 들어가 수문장(守門將), 선전관(宣傳官)을 지냈고, 갑진년(1724)에 벽사도찰방에 제수되었다. ○하고 근신하며 자기를 다스려 치적과 명성이 성대하여 連置○考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병오년(1726)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공이 부고를 받고 바삐 돌아왔는데, 슬픔으로 몸을 훠손하기를 상례의 예문보다 더하여 겨우 장사를 지내고는 병이 더욱 위중해져 중려(中廬)로 옮기니 옹정 정미년(1727) 2월 23일이다. 향년 52세이다. 4월 28일 독목동(獨木洞) 건좌 손향지원(乾坐巽向之原)에 장사지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씩씩하고 뛰어났으며 재기와 도량이 빼어났다. 효도와 우애, 화목함으로 집안을 바르게 하는 근본으로 삼고, ○明과 어질고 인자함으로 관직에 임하는 법으로 삼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오래도록 복종하며 우러르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품관 양지수(梁之叟)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낳으니 사인 김철명(金徹明)에게

시집갔다. (김철명은)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3남 1녀를 낳았다.

공은 소실에게서 낳은 4남 1녀가 있었으니, 장남은 하원(河源)으로 2남을 낳았다. 다음은 세범(世範)으로 2녀를 낳았다. 다음은 세정(世澄)이다. 다음은 세형(世衡)이다.

공을 장사지낸 후 선부인(先夫人)이 벽사공(碧沙公)이 대종봉사(大宗奉祀)인데 적사(嫡嗣)가 없다고 여러 조카 중에서 택하여 세우면 뒤에 (분쟁이) 그치지 않는 바가 있기에 널리 중론을 거두어 당질(堂姪) 진○(鎮○)를 취하여 예조와 본주에서 입안(立案)을 받아서 찰방(察訪)의 뒤를 잇게 하니 막중한 종사(宗祀)가 떨어져 끊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니 애석하지 않은가? 공의 덕으로도 오래 살지 못하고 또한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으니 하늘의 도는 아득하여 믿기 어렵다. 아! 슬프다!

(2) 지방 사료

가. 읍지

- ① 金南獻. 羽遷之子 武科 官至碧沙察訪 (이원조, 『탐라지초본』권4, 정의, 과환)

(3) 중앙 사료

가. 방목

- 본관 미상, 거주지 미상, 전력 전만호(前萬戶): 『무자식년문무과방목(戊子式年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28-27])

나. 승정원일기

- ① 兵批, 以金繼重爲遮歸萬戶, 金南獻爲水山萬戶, …….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1705) 9월 24일
- ② 兵批, …… 金南獻爲守門將 …… 『승정원일기』 숙종 42년(1716) 3월 19일
- ③ 兵曹達曰, 今三月二十二日, 各廳堂下武臣等朔試射時, 訓鍊院副正洪德望, 武臣兼宣傳官金南獻, 訓鍊都監哨官李楫, 御營廳把摠鄭道徵, 摠戎廳把摠許慶等,

俱未滿四中，竝依例汰去，其他稱病之類，試所看審，旣知其實病，故追試次，姑爲懸頃以入之意，敢達。令曰，知道。已上御營廳謄錄『승정원일기』숙종 46년(1720) 3월 22일)

④ 有政. 吏批 …… 金南獻爲碧沙察訪 『승정원일기』영조 즉위년(1724) 10월 14일)

(4)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비교

〈표 4〉 산마감목관 김세태의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행적 비교

묘비문		승정원일기	
연도	이력		
무기	水山萬戶	金南獻爲水山萬戶	숙종 31년(1705) 9월 24일
1706	무과급제		
무기	守門將	金南獻爲守門將	숙종 31년(1705) 9월 24일
무기	宣傳官	武臣兼宣傳官	『승정원일기』숙종 46년(1720) 3월 22일
1724	碧沙都察訪	金南獻爲碧沙察訪	영조 즉위년(1724) 10월 14일

이상 묘비문과 金南獻(1676~1727)의 관련 사료를 살펴보았다. 묘비문에서 도출되는 김남헌의 관직 이력은 수산 만호(水山萬戶)를 거쳐 31세가 되는 병술년(1706)에 무과에 급제한 후 출사하여 중앙의 내삼청(內三廳)에 추천되어 들어가 수문장(守門將), 선전관(宣傳官)을 지냈고, 갑진년(1724)에 벽사도찰방에 제수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묘비문에 기술된 김남헌의 행적은 지방 시료에는 현종 때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 기록이 유일하다. 이 기록만으로는 김남헌의 묘비문의 내용이 실제 사실에 근거한 기록인지 여부를 확증해 줄 수 없다.

여기에서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김남헌이 무과급제 이전 수산만호 이력에서부터 수문장, 선전관을 거쳐 벽사찰방에 이른 묘비문의 이력이 사실에 근거한 기록임을 확증 케 하는 실증자료가 되고 있다.

3) 산마감목관 김세태

(1) 豐碑文

[원문]

○ 전면

山馬監牧官 金公之墓 宜人 姜氏之墓

○ 후면

- ① 公諱世兌 係出金寧 公之六代祖諱萬鎰 富冠一島 馬畜彌山 宣廟朝 名聞朝廷
- ② 主上召見賜顏 一歲中特進 爲崇政大夫 行知中樞府事 兼五衛都摠府都摠管知事
- ③ 公之考諱利弘 贈資憲大夫 工曹判書 兼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祖諱寶贈
- ④ 嘉善大夫 工曹參判 其祖其考之贈職 以知事公秩崇也 知事公感其國恩之罔極而仍獻馬
- ⑤ 五百匹 以爲國用 傳家孫礪又獻馬二百八匹 別設牧場而名曰山馬也 自朝家褒獎其累世不
- ⑥ 世之功特施酬報之典 設置監牧官 令其子孫世襲而掌其馬 盖曠世恩典也 公之曾祖及祖
- ⑦ 皆得其職焉 近於中年 因有爭爲監牧官之變 罷其職名者十餘年矣 公以傳家宗孫 抱憾
- ⑧ 於墮失世業 遣其弟世華上京而上言 得理復設監牧官 而公首拜其職 實賴先蔭之餘慶
- ⑨ 亦公之竭誠之致也 公之居官 至於十年之久 則奉公之勤 可知 公推讓其職 而令其弟世華代焉
- ⑩ 居家友愛 亦可知矣 公生於乙丑二月初二日 卒于癸丑正月初六日 享年四十九
配姜氏大靜縣座首
- ⑪ 渭聘之女也 與公同歲 而亦卒于同年月十六日 後公十一日也 其二月十六日 合

窓于吾道水坐壬向丙之原 膝

⑫ 下有三男一女 長錫範 次錫觀 次錫伍 娶適煩不記焉

○ 좌면

基地不利 歲辛巳十二月二十一日 移葬于西位南旨壬作之原

[역문]

공의 휘는 세태(世兌), 본관은 김녕이다. 공의 6대조 휘 만일(萬鑑)은 부유함이 온 섬에서 으뜸이어서 기른 말이 산에 가득했다. 선조 때 이름이 조정에 알려져(알려졌다?) 임금이 불러 만나 좋은 낯빛으로 대하고, 1년 동안에(?) 특진하여 승정대부 행 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삼았다.

지사공의 아버지는 휘 이홍(利弘)으로 증 자현대부 공조판서 겸 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이고, 할아버지는 휘 보(寶)로 증 가선대부 공조참판이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직은 지사공의 질(秩)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사공이 나라의 은혜가 망극함을 알고 거듭 말 5백 필을 바쳐 국용으로 삼게 하였는데, 가사(家事)를 전수받은 손자 려(礪) 또한 말 208필을 바치니 목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름하길 ‘산마’라고 하였다. 조정으로부터 그 여러 대에 거친 불세지공(不世之功)을 칭찬하고 장려하여 특별히 보답하는 은전을 베푼 것이다. 감목관을 설치하여 그 자손으로 하여금 세습하여 그 말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세상에 드문 은전이다. 공의 증조(김사종)와 할아버지(김진욱)는 모두 그 직을 얻었다.

중년(中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감목관을 다투는 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 직명(職名)을 파한 것이 10여 년이다.

공은 가사를 전수받은 종손으로 세업(世業)을 추실(墮失)한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동생 세화(世華)를 서울로 올려보내어 상언(上言)하여 심리를 받아 다시 감목관을 설치하였으니, 공이 그 직을 받게 된 것은 실로 조상의 숨은 음덕에 의한 것이며 또한 공이 정성을 다한 소치이다.

공이 감목관직을 수행한 것이 십 년에 이르니 봉공(奉公)의 근면함을 알 수 있고, 공이 그 직을 사양하여 그 아우 세화가 대신하게 하였으니 집안에 있어서의 우애를 또한

알 수 있다.

공은 을축년(1685) 2월 2일에 태어나서 계축년(1733) 1월 6일에 돌아가니 향년 49세이다.

배(配) 강씨는 대정현(大靜縣) 좌수 위빙(渭聘)의 딸(오영관의 배 또한 강위빙의 딸임)이다. 공과 동갑으로 또한 동년 동월 16일에 돌아가니 공이 돌아간 뒤 11일째 되는 날이다. 그해 2월 16일 오도수(吾道水) 좌임향병지원(坐壬向丙之原)에 합장했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석범(錫範), 다음은 석관(錫觀), 다음은 석오(錫伍)이다. 장가든 곳과 시집 간 곳은 번거롭게 기술하지 않는다.

묘터가 이롭지 않아 신사년(1761) 12월 21일 서위남지(西位南旨) 임작지원(壬作之原)으로 이장했다.

(2) 지방 사료

김세태와 관련된 내용이 전하는 지방 사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3) 중앙 사료

김세태와 관련된 내용이 전하는 중앙 사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 산마감목관을 지낸 金世兌(1685~1733)에 대해서는 오직 묘비문을 통해서만 생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묘비문에서 김세태는 김만일의 6세손으로, 자신 대에 와서 선대로부터 세습되던 산마감목관직이 墜失된 것을 유감스럽게 여겨 동생 金世華(1689~1756)를 상경하게 하여 복직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산마감목관 세습이 중단된 원인, 이후 산마감목관 복직을 위해 취한 김세태의 대응과 조치 등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황구하(黃龜河)가 또 제주목에서 장론한 김세화(金世華)의 격쟁(擊錚)한 일을 읽고 나서 말하기를, “일찍이 선조조(先祖朝)에 김만일(金萬鎰)이 1만 필의 말을 바친 공로로 산

둔감목관(山屯監牧官)을 세습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후 자손 가운데 더러 불초한 자가 있어 목졸(牧卒)을 가혹하게 부리는 바람에 원고(怨苦)를 초래하여 본시(本寺)에 정소(呈訴)하는 데 이르니, 그 세습을 폐지하고 정의현감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만일의 자손 김세화의 격쟁으로 인하여 사복시에서 제주에 그 편부(便否)를 물었으므로, 이러한 장문(狀聞)이 있었던 것이나, 이 일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이해가 없다면 그가 어찌 바다를 건너 천 리의 먼 길에 와서 격고(擊鼓)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이 일은 시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숙종 45년(1719) 10월 17일)

4. 맷음말

이상 17·18세기 제주지역에 건립된 官人的 묘비를 중심으로 묘비 주인공의 생전 행적과 승정원일기의 기사 내용을 비교,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에 기술된 기사 내용의 세밀함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 기록된 읍지나 개인 저술인 경우 주인공의 행적에 대한 서술이 개략적인 기록인 반면, 승정원일기의 기사 내용은 지방 사료가 제공하는 개략적 서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당대 즉시적으로 기록된 1차 사료라는 자료의 성격에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승정원일기 기사 내용은 조선시대 제주지방에 건립된 묘비의 사료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지방 사료로는 고증되지 않는, 묘비문에 기록된 주인공의 행적이 승정원일기를 통해 허위나 과정이 아닌 실재적 사실로써 증명되기 때문이다.

3강

정조의 제주통치론

김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정조의 제주통치론

김호
(서울대)

1778년: 통치 선언문



- ①민산(民產) ②인재 등용 ③국방 정책 ④국가 재정

大誥 (1778년, 정조2, 6월 4일)

- 과인(寡人)은 역대 선왕의 왕업을 이어받아 마치 깊은 물과 살얼음을 맑는 듯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한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우리 영조 임금을 종묘에 모시고 예제를 마치니 이제 의례가 상례에서 길례(吉禮)로 바뀌었다. 이에 곤룡포와 면류관 차림으로 악기를 갖추어 신하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 내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 앞선 임금들이 다스리던 백성들 앞에 이제 서게 되었다. 감히 조선의 역대 임금들의 마음, 즉 좋은 정치를 하려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삼고 선왕의 정치로 나의 정치를 삼아, 역대 조선 왕들의 좋은 정치를 하려는 뜻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각종 업적을 뒤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제 처음으로 조정에서 정사를 계획하는 이때를 만나니 군신 상하가 의당 서로 노력하고 좋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내가 네 가지를 준비하였으니 들어보라. 조목은 다음과 같다.
 - ①백성의 산업[民產]을 일으키는 일,
 - ②좋은 인재(人材)를 발굴하는 일,
 - ③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
 - ④나라 살림을 잘 운용하는 일[財用]에 관한 것이다

① 民產: 이용후생

-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은 오직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데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논과 밭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리 힘을 다하려고 해도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아울러 공업이나 장사 즉 상업은 농업에 비해 중요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으니 오히려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밑천이 된다.

농업 문제(應旨_農書)

伏以歲門洞開。萬物勃興。縣章日積於公車。天德
肇於壯歲。此誠曠千載一有之盛舉也。名忝法
從之列。憂分芻牧之責。臣商其一耳。有懷無隱。宜
後於人。而默息至今。謀非獲已。竊念臣厚蒙恩渥。
出入通判。以依趨乎日月之光者。有年于茲。每觸
我殿下朝乾夕惕。一念元元。事僕民瘼。則上供
之勤猶且戒減。年或告歉。則唯正之人。亦令蠲貸。
夏糧之所討謾。熟獲之所諮訪。蓋鮮有一息之頃。

서유구의 상소문

楓石全集 金華知府集 卷一
淳昌郡守應旨疏

伏以臣於昨年冬得伏見 縱音下者。使中外咸陳勸農之策矣。若曰予食雖可減。民不可以闕食。即三代以後所未有之聖言也。凡在臣庶之列者。孰不感泣殫誠。以對揚其萬一也哉。顧臣以愚駢寡識。忝在百工之末。耿耿一念。如負大何。今於飭教之下。不勝悚惶。敢以芻蕘之說。條列焉。

이진택의 상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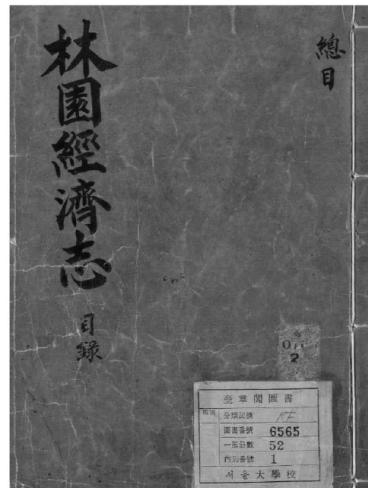
忠貞論農政疏 戊午立冬山
伏以口穀以農有不知者。三辱不如士。利不如商。安不如百工。今夫人情莫不羨卑。莫不群奢。莫不憚勞。而農有不知者。三惟是三。不如者不去。則雖日撻而求其勤民。亦卒莫之勤也。大抵農道至精。爲之以農。爲之以興。猶空全書。 第一編 文 卷九 四十八
舊故。勢多而利寡。勞多而利寡。故棄者日卑。棄者日卑。故爲之益難。苟相因農政疏矣。臣本浦劣尤時稼穡。願何敢強所不知。以欺天聽。而十行絲綸。勤杏博訪。當先朝勤耕之年。聽上古田畯之諺。臣方守土。劬煩感激。謂將三歲盡說仰鑿。乙賈。一曰便農。將以俟之也。二曰厚農。將以利之也。三曰上農。將以督之也。妄陳瞽說。無任惶恐之至。

정약용의 상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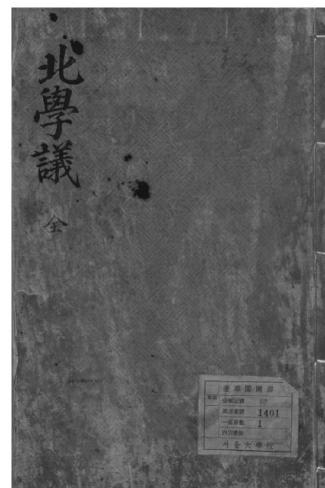
북학(北學)-설수외사/임원경제지/북학의



이희경의 북학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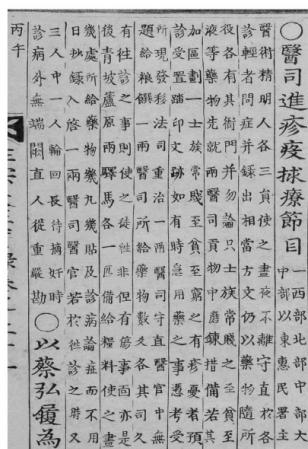


서유구의 북학론



박제가의 북학론

정조의 역병 및 복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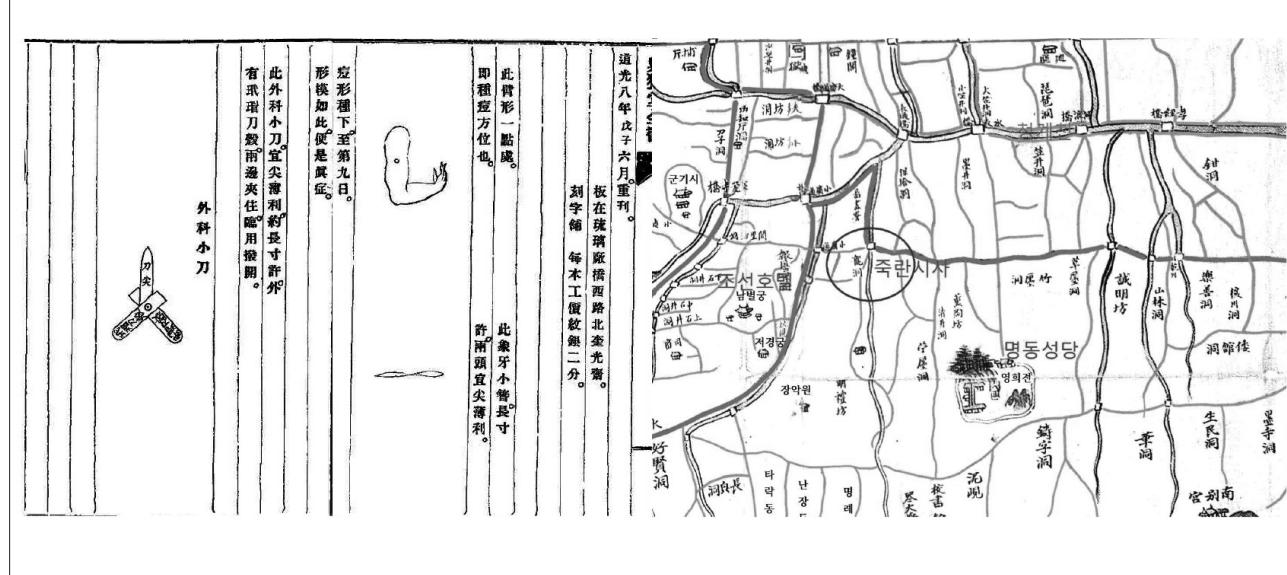


진역구료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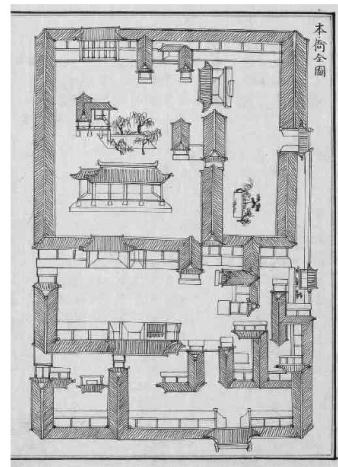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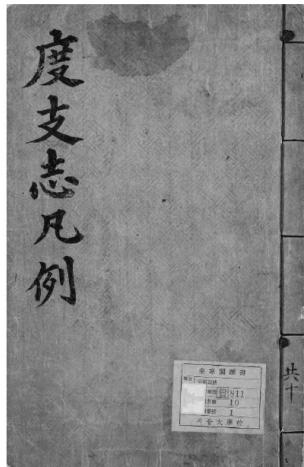
혜정요람

정약용의 북학-종두법 연구



② 국가 재정: 富의 재분배

- 관문(關門)과 장시(場市)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못과 어량(魚梁)에서 고기잡이를 금하지 않은 것은 성왕(聖王)이 백성과 함께 이용하려는 생각에서였다. 지금은 어선은 길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소금 가마는 크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구리와 철과 은과 납도 모두 세금을 징수하는 등 이익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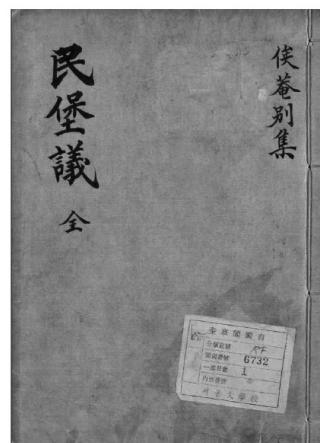


호조(戶曹)- 탁지지(度支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③ 국방(외교): 여행록과 통신사 필담



통신사 행렬도(일본)



정약용의 국방론: 민보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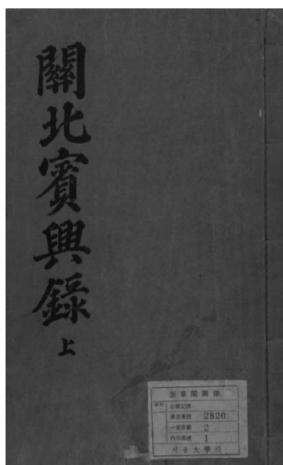


박지원의 열하일기
(서울대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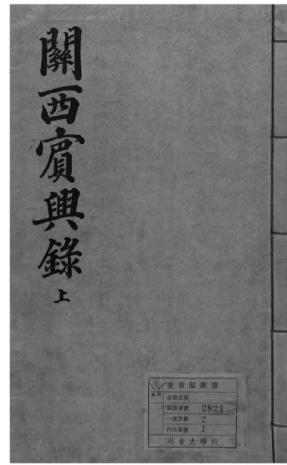
④ 인재 등용

- 조선은 성왕(聖王)이 서로 이어받고 좋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재상을 할만한 인재도 있었고, 장군이 될만한 인재도 있었고, 좋은 도지사가 될 인재도 있었으며, 각종 업무에 필요한 직책에 대해서도 모두 그 재주에 따라 맡길 수 있었다. 정부에 현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미덕이 있었고, 지방에 현능한 자가 등용되지 못했다는 한탄이 없었다. 그만큼 인재들이 많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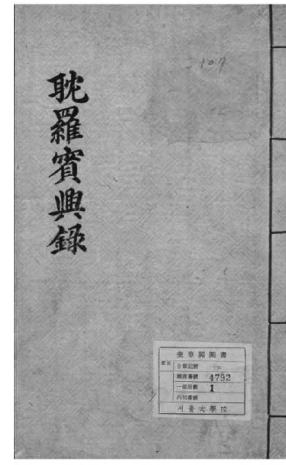
빈흥 및 考績



함경도 인재 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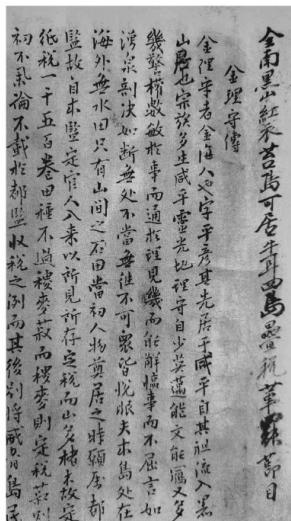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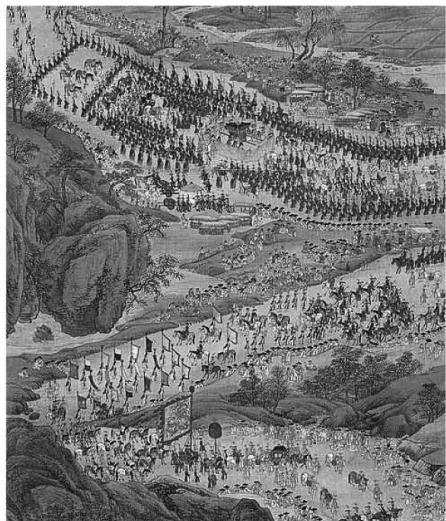


평안도 인재 등용



제주도 인재 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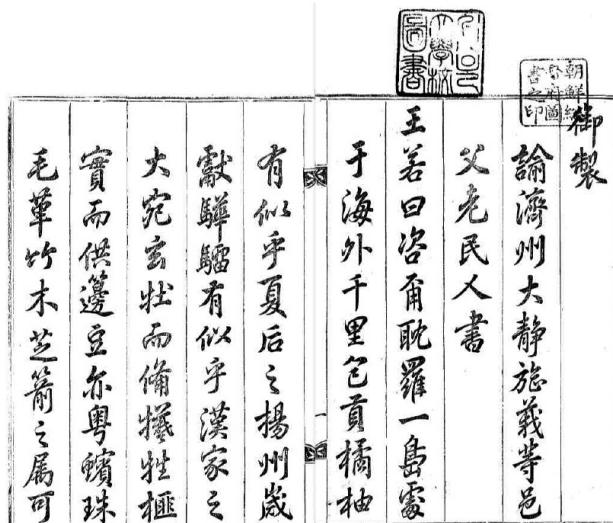
民主/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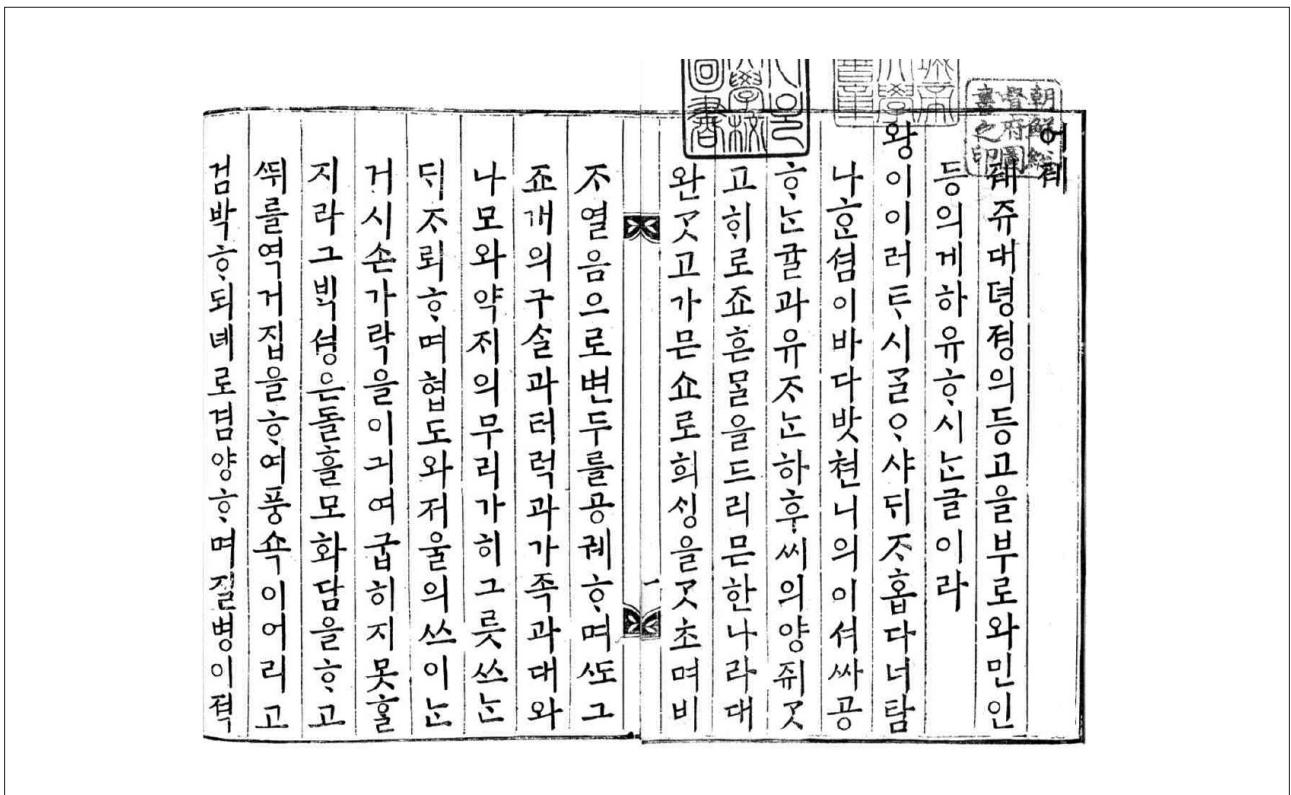


흑산도 김이수는 1791년(정조5) 청원문을 올려 흑산도의 종이 원료 닥나무의 감면을 요청함.

- 김이수의 호소로 여러 사람이 평안(平安)하게 되어 집나갔던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버렸던 자식도 다시 키울 수 있었다.
굶주린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추위에 떨던 사람들도 옷을 얹어 입게 되었다.
아! 아름답구나. 이 누구의 공인가! 섬사람들은 이 세상 다하도록 이를 잊을 수 없네. 큰 공과 위대한 업적은 돌에 새겨야 마땅하다.

1781년 제주도에 내란 정조 윤음





정조: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 대고(大誥) 정조 2년 무술(1778) 6월 4일(임진) [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고 대고(大誥)를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인(寡人)이 역대 선왕의 왕업을 이어받아 마치 깊은 물과 살얼음을 밟는 듯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한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우리 영종대왕(英宗大王)을 종묘에 부묘(祔廟)하는 예제를 이미 마치니 의례가 길례(吉禮)로 바뀌어 이에 곤복(袞服)과 면류관(冕旒冠) 차림으로 악기를 갖추어 삼가 태묘에 알현하고 뜻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이 예법은 곧 선왕의 예법이다. 나 소자(小子)가 선왕의 자리에 서서 선왕의 백성에게 임하니, 감히 선왕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선왕의 정사(政事)를 정사로 삼아 우리 선왕의 뜻과 사업을 뒤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처음으로 조정에서 정사를 계획하는 이때를 만나니 군신 상하가 의당 서로 노력하는 방도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 크게 고하는 바이다. 조목은 모두 4가지가 있으니 백성의 산업[民產], 인재(人材), 융정(戎政), 재용(財用)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무릇 관리들은 부유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선하니’¹⁾라고 하였으니, 백성의 산업을 제정하는 일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상고(上古)에 행한 정전법(井田法)은 훌륭하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명전(名田)²⁾의 일 이 가장 고제(古制)에 가까운데,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이래로 시행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토지가 좁은 데다 산과 계곡이 대부분을 차지하니 우물 정(井) 자(字)의 모양대로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고 호족들의 토지 겹병이 그대로 있어서 여러 선왕의 성대한 시절에도 균전(均田)이나 양전(量田)에 대한 의론이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습속으

1) 《서경》〈홍범(洪範)

2) 토지 겹병을 막기 위해 민간의 사적인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는 뜻의 한민명전(限民名田)

로 굳어져 변경하기 어렵고 뭇사람들의 시끄러운 불평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아, 백성이 먹고사는 것은 오직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데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각각 자기 전토를 가질 수 없다면 비록 힘을 다하려고 해도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공업과 상업은 말단의 일이지만, 백성이 이것에 힘입어 넉넉히 먹고살 수 있으니 오히려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밑천이 된다. 그러나 강과 뜻의 이익으로 말하자면 바닷가에 촘촘한 그물을 치지 않는 것은 제철에 고기를 잡으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힘은 다했고 나라의 세금은 무거워서이다. 또 동남 바다의 산물이 대부분 요동(遼東)과 발해(渤海)로 돌아가는 것은 지리(地理)에 변천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맷나무를 하는 일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수풀이 우거졌다가 지금은 민동산이 되었으니 궁방(宮房)이 함부로 차지한 것이 아니면 아문(衙門)에서 빼앗은 것임을 알겠다. 가마솥을 씻고 불을 지피려는 저 사람들이 얼음과 눈 속을 헤치고 간신히 구해 온 맷나무가 또 얼마나 되겠는가. 길쌈해서 지은 옷감으로 말하자면 열 손가락으로 찬 것들은 모두 고을 관아에 바치고, 항아리에 비축된 곡식으로 말하자면 100묘(畝)에서 남는 곡식이 과부에게 미치지 못한다. 아, 관찰사와 수령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지 못하고 게다가 탐학한 아전이 문서를 놓간하여 잇속을 챙기느라 잔혹하게 착취하니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한다. 젖먹이에게도 군역을 지우니 어린아이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른 해골에도 세금을 거두니 이웃들이 모두 곤궁해진다. 시골 마을에서 권세를 부리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자는 거의 강동(江東)의 세 가지 해악보다 심한 점이 있으니 그 폐단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³⁾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된 규례로 말하자면, 관사로는 상평창(常平倉), 창고로는 제민창(濟民倉)⁴⁾, 관리로는 토포사(討捕使)를 설치하고,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농사의 작

3) 진(晉)나라 때 양선(楊羨) 사람 주처(周處)는 완력이 세고 방자하게 굴어 남산(南山)의 범, 장교(長橋) 아래의 교룡(蛟龍)과 더불어 향리에서 세 가지 해악으로 꿈혔는데, 후에 주처가 개과천선하여 범과 교룡을 사살해서 해악이 모두 사라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58 周處列傳》

4) 영조 대에 백성을 구휼할 목적으로 지방에 설치한 창고를 가리킨다. 영조 39년(1763) 경상도에 처음 제민창을 설치하여 곡식 6만 곡(斛)을 저장하였고 이듬해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설치하여 각각 곡식 3만 곡을 저장하였다. 《國朝寶鑑 卷65 英祖朝9》

황을 살펴 등급을 나누는 정식을 반포하고 겨울이 다 가면 정봉(停捧)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또 흉년이 들면 곡식을 옮기고 경사를 만나면 조세를 감면하는데, 이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도적을 경계하기 위해서이고 끊주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작은 은혜이니 백성의 산업을 제정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에 힘쓰고자 한다면 어찌 다른 방도가 없겠는가. 따라서 ‘미관말직의 벼슬아치라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반드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으니, 옳은 말이 아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임금님께 길사(吉士)가 하도 많구나.’⁵⁾라고 하였으니, 인재를 양성하려면 반드시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태고에는 빈흥(賓興)의 제도가 있었고⁶⁾ 그 다음에는 향거(鄉舉)의 제도가 있었으며⁷⁾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에 내려와서는 오로지 과거(科舉) 제도만을 승상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성왕(聖王)이 서로 이어받고 유현(儒賢)이 배출되어 당시에는 재상의 인재도 있었고 장수의 인재도 있었고 관찰사의 인재도 있었으며, 온갖 집사(執事)에 대해서도 모두 그 재주에 따라 맡겼다. 조정에는 어진 이를 등용하는 미덕이 있었고 초야에는 등용되지 못한 은사가 있다는 한탄이 없었으니, 이에 인재가 성대하게 일어났다. 아,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는 오직 기르고 가르치는 일인데 평소에 기르지 않고 적절히 가르치지 않다 보니 이미 덕(德)을 지키고 예(藝)에 노니는 가르침은 없어지고 과거 시험으로만 사람들을 뽑고 있다. 고시(考試)에 관해 말하자면 조정에서는 매양 고관(考官)을 의심하고 고관은 결핏하면 응시자를 속여 위와 아래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데 어찌 영재를 찾아 나라에 쓸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성균관은 사방의 모범이 되는 곳인데 경서에 정통하다는 칭찬을 들어 보지 못하겠

5) 《시경》〈대아(大雅)〉

6) 주(周)나라 때 향대부(鄉大夫)가 그 고을의 소학(小學)에서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천거하여 국학(國學)에 들어가게 하던 제도로, 이들을 전송할 때에 빈객(賓客)으로 예우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周禮 地官 司徒》

7) 주나라 때 고을마다 향대부를 두고 세 가지로써 가르치다가 3년마다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중앙에 천거 하던 제도로, 향거이선(鄉舉里選)이라고도 하였다. 《周禮 地官 大司徒》

고, 사학(四學)과 향교(鄉校)는 인재를 배양하는 근본인데 한갓 형식이나 숭상하는 데로 귀결하여 순후한 풍속이 갈수록 야박해져 큰 학자가 나오지 못한다. 무과(武科), 의과(醫科), 역과(譯科), 음양과(陰陽科), 율력과(律曆科)의 경우에도 폐단이 모두 그려해서 다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전조(銓曹)의 선발로 말하자면 감별하는 지혜가 밝지 못하고 요행으로 들어오는 문이 크게 열려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좌천시킬 때에 근무 성적 평가를 따르지 않고, 관직에 후보를 의망할 때에 관직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청현(淸顯)이라는 벼슬 이름이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경상(卿相)으로 승진할 적에 거쳐 가는 단계가 되었다. 문지(門地)와 문별(門閥)을 보고 등용하는 것은 몹시 옳지 않은 일이니 한미한 선비가 출세할 길이 없다. 가르치고 선발하는 방도가 이처럼 잘못되었으니 지치(至治)를 원하지만 상반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된 규례로 말하자면, 외람된 등용을 막기 위해 자품(資品)을 따르는 법규가 있고 적체를 소통하기 위해 감별하여 서용하는 규례가 있으며, 청렴하고 충절이 있는 신하들을 포상할 적에는 그 자손에게도 은혜를 주고 탐학한 관리를 징계할 적에는 종신토록 용서하지 않으며, 정부(政府)에서는 관찰사를 맡길 만한 인재를 천거하고 관찰사는 초야의 숨은 선비를 천거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말단의 일 아니 어찌 인재를 양성한다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근본에 힘쓰기를 원한다면 어찌 그 방도가 없겠는가. 따라서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장수를 누리니 어찌 인재를 양성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있으니, 옳지 아니한가.

《주역》에 ‘문을 겹겹으로 달고 목탁을 쳐서 사나운 나그네를 대비한다.’라고 하였으니 군정을 다스리는 것은 편제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나라 병사는 사도(司徒)에게 병적을 두고 사마(司馬)에게 소속되었으니 농민에서 병사를 선발한 것이다.⁸⁾ 한

8) 주례(周禮)에 소사도(小司徒)는 만민을 모아 오(伍), 양(兩), 졸(卒), 여(旅), 사(師), 군(軍)으로 편제하였다. 병사들은 평상시에 대사도(大司徒)에 병적을 두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대사마(大司馬)에 소속되었다. 평시에는 농사를 짚고 전시에는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병농일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磻溪隱錄 卷23 兵制考說 制兵》

(漢)나라의 남군(南軍), 북군(北軍)과 당(唐)나라의 십육위(十六衛)와 송(宋)나라의 동반(東班), 서반(西班牙)과 명(明)나라의 십이위(十二衛)는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이에 이르러 농(農)과 병(兵)이 분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치(文治)로 나라를 세우고 무략(武略)도 갖추었다. 부병(府兵)에서 삼군(三軍)이 되고 삼군에서 오위(五衛)가 되어 도성에는 총관(摠管)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진영(鎮營)을 설치하여 각각 통솔하는 장수가 있었다. 병사와 농민이 일체가 되어 관에서는 군량을 낭비하지 않았고 군대는 정예롭다는 칭찬이 있었다. 비록 고려 말기의 폐단을 징계로 삼은 것이지만 주나라 초기의 법을 본받은 면도 있다. 이 때문에 수비가 견고하고 공격하면 승리를 얻었다. 임진왜란 이후 비로소 훈련도감이 생겨서 이로부터 군(軍)을 나누는 제도가 나타나 오위가 마침내 폐지되었다. 게다가 병사를 모집해 군영을 설치하고 부(部)를 나누어 국(局)을 설치하며 다시 경기의 병줄을 갈라 거느리게 하여 병사(兵使)라 칭하기도 하고 대장(大將)이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조처가 번잡하고 연혁(沿革)이 무상하였다. 그 밖에 지방의 절도사(節度使) 제도는 혼잡하고 기율이 없는 것이 중앙에 비해 더욱 갑질은 되었다.

제승(制勝)의 방략으로 말하자면 장수는 범처럼 용맹스러운 위엄이 없고 병줄은 오합지졸의 근심이 있으며, 삼군(三軍)을 오영(五營)에 분속시켜 오영이 각각 그 하나를 전담하니, 군이 거의 가병(家兵)이 되는 폐단과 군문(軍門)이 많은 근심에 가깝지 않겠는가.

훈련의 방도로 말하자면 《육도(六韜)》, 《삼략(三略)》과 《손자(孫子)》, 《오자(吳子)》는 치워 버려 쓰지도 않고 야전(野戰) 습조(習操)와 수상(水上) 습조의 규식은 아이들 장난 같은데, 이는 척계광(戚繼光)의 법이 나오면서 옛 제도가 무너진 데서 연유한다.⁹⁾ 이를바 왜적을 방어하는 방도로도 오히려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방의 국경에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이겠는가.

군적(軍籍)으로 말하자면 한정(閑丁)이 날로 줄어들고, 마정(馬政)으로 말하자면 목축

9) 조선의 군사 훈련은 임진왜란 이후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본받아 완성된 《병학지남(兵學指南)》을 토대로 하였는데 실제 열병과 훈련 내용에서 차오가 많았다. 정조 9년(1785) 《병학통(兵學通)》이 완성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正祖實錄 9年 9月 11日》

이 변성하지 않는다. 양병(養兵)하는 방도로 말하자면 군향(軍餉)을 배포(配布)하고 군보(軍保)를 설치하는 데 처음에 법을 세운 것이 치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폐단이 생겨서 온 나라 재정의 절반을 밑 빠진 독으로 만들어 놓았다. 만에 하나라도 변방에 전쟁이 났다는 경보(警報)가 있어서 격문이 급히 오간다면, 이와 같은 군제(軍制)로는 비록 옛적의 명장(名將)에게 도성 밖의 군무를 맡겨도 계략을 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근본이 올바르지 못하면 말단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라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된 규례로 말하자면, 군무를 강습하기 위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달마다 시험하며 군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후하게 주고 별을 박하게 주며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균등히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군역을 대신 서게 하며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호궤(犒饋)한다. 군영에 각기 장수가 있는데 대신(大臣)이 거느리고 문신(文臣)이 보좌하며, 크고 작은 영진(營鎮)에는 문관과 무관을 번갈아 두어 각각 서로 견제하게 한다. 이것이 그 대략이지만 군정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에 힘쓰고자 한다면 어찌 그 방도가 없겠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싸우지 않을지언정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니 옳지 아니한가.

《예기(禮記)》에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한다.’라고 하였으니,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길은 반드시 비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夏)나라는 공법(貢法)을 쓰고 은(殷)나라는 조법(助法)을 쓰고 주(周)나라는 철법(徹法)을 쓰고,¹⁰⁾ 한(漢)나라는 3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당(唐)나라는 조용조(租庸調)를 썼으니, 시대마다 각각 제도가 달랐지만 모두가 아랫사람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 우리나라에는 토양에 따라 토질을 변별하여 세 등급으로 전세(田稅)를 거두고 공납을 부세에 섞어서 공납과 부세가 균등하다. 이것이 나라에 항상 비축이 있고 사람들이 본업을 즐거워한 까닭이다.

근래 나라의 경상 비용이 점점 증가하여 공사(公私)가 모두 곤궁한데, 재물을 거두

10) 하는 50묘로 공법을 했고, 은은 70묘로 조법을 했고, 주는 100묘로 철법을 했는데 실상은 모두 10분의 1의 세법이었다. 《經世遺表 田制》

는 방도로는 더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지만 재물을 소비하는 방도는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고의 비축으로 말하자면 한 해의 수입이 한 해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쓸데없는 관리와 쓸데없는 군병을 먹이는 데 열에 일고여덟이 나간다. 이로부터 각각 관부(官府)를 설치하여 전곡(錢穀)을 나누어 주관하니 호조가 수입과 지출의 수량을 전 담하지 못하고 선혜청이 크고 작은 공상(供上)을 주관하지 못한다. 잘못을 답습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는데도 하던 대로만 한다.

창름(倉廩)으로 말하자면 곡식을 사들이고 내다 파는 것이 좋은 제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답습한 지 이미 오래되어 옛 뜻이 사라졌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법에 폐단이 생겨 탐학이 일어난다. 안으로는 서울의 관사와 밖으로는 지방의 여러 고을에서 올바르지 않고 근거도 없는 명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식량을 풍족히 하기 위해 나온 계책이겠지만 백성이 도리어 해악을 받고 있고 자기를 살찌우는 데서부터 점차 불어난 폐단으로 인해 아전이 농간을 부린다. 사정이 이러한데 포흡(逋欠)한 아전을 날마다 죄주고 곤궁한 백성을 날마다 독촉한들 무엇이 이롭겠는가.

세금의 징수로 말하자면, 관문(關門)과 장시(場市)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못과 어량(魚梁)에서 고기잡이를 금하지 않은 것은 성왕(聖王)이 백성과 함께 이용하려는 생각에서였다. 지금은 어선은 길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소금 가마는 크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구리와 철과 은과 납도 모두 세금을 징수하고 심지어 민결(民結)과 신포(身布)도 이문이 넘겠다 싶으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고 건수가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한다. 이것은 군포를 줄여 주고 그것을 대신 충당했기 때문인데 선왕의 뜻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선왕께서도 일찍이 ‘균역법은 곧 나의 사업이지만 인정에 합할지는 모르겠다. 마땅히 일을 주관한 신하의 자손이 흥하는지 쇠하는지 보아서 그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징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위대 하도다, 성인의 말씀이로다. 오직 과인은 단지 실추하지 않고 준행할 때름이니, 이것이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된 규례로 말하자면,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달마다 회계를 하고 해마다 장부를 마감하며 절약에 힘쓰기 위해서 궁세(宮稅)를 협파하고 공

납(貢納)의 명목을 줄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작은 일이니 어찌 재용을 넉넉하게 한다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근본에 힘쓰기를 원한다면 어찌 다른 방도가 없겠는가. 따라서 ‘재물을 마련하는 데 큰 방도가 있다. 생산하는 자가 많고 소비하는 자가 적으며 일하는 자는 빨리하고 쓰는 자가 더디게 하면 재물은 항상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옳지 아니한가.

총괄해서 말하면 오늘날의 폐단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이미 진이 빠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난 것과 같다. 기강이 문란하여 조정이 존경받지 못하고 언로가 막혀 직언이 들리지 않으며 역변이 거듭 발생하여 의리가 더욱 어두워졌다. 어느 것이든 눈앞에 닥친 위급한 증세가 아닌 것이 없건만 지금 특별히 네 가지 조목을 든 것은 참으로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근본을 굳건히 하는 것은 백성에게 달려 있고 백성을 기르는 것은 양식에 달려 있으니, 양식이 풍족하면 백성을 가르칠 수 있고 이미 백성을 가르쳤다면 또 백성이 반드시 나라를 경계하고 지키며 보탬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보전하는 큰 근본이다.

아, 오늘날의 나랏일을 한번 살펴보면 경장(更張)을 해야 옳겠는가, 그대로 따라가야 옳겠는가. 큰 집이 기울어지면 기둥 하나로 지탱하기 어렵고 온갖 강물이 넘치면 조각 배 하나로 건너기 어렵다. 삼대의 제도를 갑자기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소강(小康)의 정 치도 기약할 수 없다. 중상에 맞는 처방도 알지 못하고 실제 착수할 방법도 모른다. 어찌 이를 두고 생각은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어찌 이를 두고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둘러댈 것인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니 과인의 마음은 진실로 슬프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과인의 뜻이 서지 못하고 과인의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참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면 오로지 나 한 사람에게 있을 뿐이다. 아, 임금의 말은 간단해야 마땅한데 이처럼 거듭 되풀이하며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자세히 말하려다 보니 말이 부득불 번잡해진 것이다. 선왕의 큰 도를 강구하고 선왕의 옛 법을 회복하여 우리 선왕이 부여하신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어진 신하들에게 깊이 바란다. 아, 그대들은 조정의 관료로서 혹여 과인의 하교를 빙밀로 보지 말고 나라를 집안처럼 근심하여 지난번에 말한 실질에 힘쓸 방도로 나 과인을 깨우쳐 인도하라.”

2. 제주·대정·정의의 부로(父老)와 백성들에게 하유(下諭)한 윤음

왕은 이르노라. 아, 너희 탐라(耽羅)는 천 리나 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공물(貢物)로 굴을 바치는 것은 하(夏) 나라의 양주(揚州)와 유사하고, 해마다 좋은 말을 진현하는 것은 당(唐) 나라의 하황(河湟)과 유사하다. 검은 빛깔의 수소로 써 희생(犧牲)을 갖추고 비자나무 열매로 변두(邊豆)에 이바지하며, 또 진주(珍珠), 모혁(毛革), 죽목(竹木), 지전(芝箭) 등 기용(器用)의 자료가 되고 약재(藥材)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은 손가락으로도 다 꼽을 수 없다. 백성들은 돌을 쌓아 담장을 만들고 띠를 엮어 지붕을 만들며, 풍속은 검소하면서도 예양(禮讓)이 있고 질병이 적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으니, 또한 바다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도회지이다. 다만 그 토질이 척박하여 보리, 밀, 콩, 조만이 생산되고 경제적인 생활 수단을 배로 운송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니, 아, 위태롭고 위태롭다.

이에 조정에서 특별히 진념(軫念)하여 내륙 지방과 동일하게 대하여 어루만져 주고 구휼하는 방도라면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아, 우리 선대왕께서는 지도를 고찰하고 공물을 살피시어 정령을 내고 인정(仁政)을 시행하셨다. 기근을 고해 오면 곡식을 실어 보내어 먹여 주시고, 방물(方物)을 바치러 오면 돌아갈 때 먹을 양식을 주어서 보내셨으며, 인재를 찾고 폐단을 물기 위하여 번번이 어사를 보내고,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형옥(刑獄)을 살피기 위하여 매번 명을 받들고 가는 관원에게 신칙하였으니, 온 섬의 몇만 명 백성이 먼 지방 백성을 부드럽게 대해 주는 교화에 젖어 든 것이 50여 년이었다.

그러다가 과인이 등극한 이후로는 한 가지 혜택이나 은총도 그대들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간 흉년이 든 해가 없었던 것은 비록 하늘의 돌보심에 힘입어서였으나, 표류 한 선박이 있었던 것에서 파도가 순조롭지 않음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또 멀리 겹겹의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질고(疾苦)가 있어도 하소연할 곳 없고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발탁될 계제(階梯)가 없으니, 나는 이 점을 매우 불쌍히 생각한다. 아, 공물을 현납하는 것에 관련된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지만 누가 너희를 위해 진달하려 하겠으며, 주현(州縣)의 차역(差役)이 반드시 번거로울 것이지만 누가 너희를 위해 견감해 주려 하겠

는가. 하늘이 인재를 낳는 것은 실로 고금이 다를 바 없고 사람의 본성은 섬이나 육지나 차이가 없다. 가난한 집이라고 어찌 고유(高維), 고조기(高兆基)처럼 훌륭한 선비가 없겠는가마는 누가 인재를 추천하려 하겠으며, 서민들의 집이라고 어찌 김칭(金秤)처럼 효도하고 정 열부(鄭烈婦)처럼 정절을 지킨 사람이 없겠는가마는 누가 포양(褒揚)하려 하겠는가. 원목(元牧)과 산목(山牧)의 말이 잘 번식하여 말이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정사가 없으며, 포인(鮑人)과 선인(船人)이 편안히 지내어 직업을 잃거나 살 곳을 잃는 탄식이 없는가? 송옥(訟獄)은 판결이 공평무사하여 과연 억울한 일을 당한 부류가 없으며, 이서(吏胥)는 가렴주구를 통절히 끊어 과연 곤궁한 처지에 놓일 염려가 없는가?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이 눈에 선하여 매번 남쪽을 돌아볼 때마다 진기한 음식도 맛있는 줄을 모르겠다.

아,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모두가 나의 자식인데 지금 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되었으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한밤중에 생각이 이에 미치면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에 이조에 명하여 문무(文武) 신하 가운데 자급(資級)과 이력을 갖춘 사람을 택하여 세 고을의 네 장리(長吏)를 교체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정사를 새롭게 하고, 또 전 홍문관 응교 박천형(朴天衡)을 어사로 명하여 가서 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한 다음 과거를 실행하여 인재를 뽑도록 하였으니, 이는 바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 재주가 있으면 반드시 쓰일 기회인 것이다. 아, 너희 대소 군민(軍民)들은 간절히 당부하는 나의 유지를 조용히 듣고 백성들의 질고를 묻는 나의 뜻을 깨달아서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

아, 지난번에 특별히 명하여 인복(引鯤)의 수를 줄이게 한 것이 비록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하였으나, 한 푼이나 반 푼의 효과라도 있었는가? 그리고 여섯 가지 고역(苦役)의 윤회(輪回)를 혁파한 일, 각 산장(山場)의 횡축(橫築)을 창시한 일, 구점군(驅點軍)의 예전 규례를 영원히 없앤 일, 우마감(牛馬監)의 권상(勸賞)을 새로 정한 일도 전에 비해서 요량껏 처리하는 이로운 점이 있는가? 그 밖에도 백성이나 고을에 관계되는 폐단이 있으면 크건 작건 따지지 말고 모두 어사에게 달려가 호소하도록 하라. 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내 너희들을 위해 재량껏 처리하겠노라.

3.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 무오년(1798년), 홍재전서 제10권

만천명월주인옹은 말한다. 태극(太極)이 있고 나서 음양(陰陽)이 있으므로 복희씨(伏羲氏)는 음양을 점괘로 풀이하여 이치를 밝혔고, 음양이 있고 나서 오행(五行)이 있으므로 우(禹)는 오행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 다스리는 이치를 밝혀 놓았으니, 물과 달을 보고서 태극, 음양, 오행에 대해 그 이치를 깨우친 바 있었던 것이다. 즉 달은 하나뿐이고 물의 종류는 일만 개나 되지만, 물이 달빛을 받을 경우 앞 시내에도 달이요, 뒤 시내에도 달이어서 달과 시내의 수가 같게 되므로 시냇물이 일만 개면 달 역시 일만 개가 된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달은 물론 하나뿐인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오직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해와 달이 오직 밝음을 보여 주며, 모든 물건들이 서로 보는 것은 남방의 괘(卦)이다. 밝은 남쪽을 향하고 앉아 정사를 들었을 때 세상을 이끌어 갈 가장 좋은 방법을 나는 터득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무(武)를 승상하던 분위기를 문화적인 것으로 바꾸고 관부(官府)를 뜯이나 거리처럼 환하게 하였으며, 현자(賢者)는 높이고 척신(戚臣)은 낮추며,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은 멀리하고 어진 사대부를 가까이하고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대부라는 이들이 반드시 다 어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금세 검었다 금세 희었다 하면서 남인지 북인지 모르는 편폐(便嬖)·복어(僕御)와는 비교가 안 될 것 아닌가.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 보았는데,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가고, 무리 지어 쫓아다니며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모르는 자도 있었다. 모양이 얼굴빛과 다르고 눈이 마음과 틀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트인 자, 막힌 자, 강한 자, 유한 자,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소견이 좁은 자, 얇은 자, 용감한 자, 겁이 많은 자, 현명한 자, 교활한 자, 뜻만 높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자, 생각은 부족하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자, 모난 자, 원만한 자, 활달한 자, 대범하고 무게가 있는 자, 말을 아끼는 자, 말재주를 부리는 자, 엄하고 드센 자, 멀리 밖으로만 도는 자, 명예를 좋아하는 자, 실속에만 주력하는 자 등등 그 유형을 나누자면 천 가지 백 가지일 것이다. 내가 처음에는 그들 모두를 내 마음으로 미루어도 보고, 일부러 믿어도 보고, 또 그의 재능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일을 맡겨 단련도 시켜 보고, 혹은 흥기시키고, 혹은 진작시키고, 규제하여 바르게

도 하고, 굽은 자는 교정하여 바로잡고 곧게 하기를 마치 맹주(盟主)가 규장(珪璋)으로 제후(諸侯)들을 통솔하듯이 하면서 그 숱한 과정에 피곤함을 느껴온 지 어언 20여 년이 되었다.

근래 와서 다행히도 태극, 음양, 오행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또 사람은 각자 생김새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치도 터득했다. 그리하여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쓰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여 그 천태만상을 나는 그에 맞추어 필요한 데 이용만 하는 것이다. 다만 그중에서 그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며, 선한 점은 드러내고 나쁜 점은 숨겨 주고, 잘한 것은 안착시키고 잘못한 것은 뒷전으로 하며, 규모가 큰 자는 진출시키고 협소한 자는 포용하고, 재주보다는 뜻을 더 중히 여겨 양단(兩端)을 잡고 거기에서 중(中)을 택했다. 그리하여 마치 하늘에 구천(九天)의 문이 열리듯 앞이 탁 트이고 훤히 누구라도 머리만 들면 시원스레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트인 자를 대할 때는 규모가 크면서도 주밀한 방법을 이용하고, 막힌 자는 여유를 두고 너그럽게 대하며, 강한 자는 유하게, 유한 자는 강하게 대하고, 바보 같은 자는 밝게, 어리석은 자는 조리 있게 대하며, 소견이 좁은 자는 넓게, 얕은 자는 깊게 대한다. 용감한 자에게는 방패와 도끼를 쓰고, 겁이 많은 자에게는 창과 갑옷을 쓰며, 충명한 자는 차분하게, 교활한 자는 강직하게 대하는 것이다.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은 뜻만 높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자를 대하는 방법이고, 순주(醇酒)를 마시게 하는 것은 생각은 부족하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자를 대하는 방법이며, 모난 자는 둥글게, 원만한 자는 모나게 대하고, 활달한 자에게는 나의 깊이 있는 면을 보여 주고, 대범하고 무게가 있는 자에게는 나의 온화한 면을 보여 준다. 말을 아끼는 자는 실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 말재주를 부리는 자는 되도록 종적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며, 엄하고 드센 자는 산과 못처럼 포용성 있게 제어하고, 멀리 밖으로만 도는 자는 포근하게 감싸 주며,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내실을 기하도록 권하고, 실속만 차리는 자는 달관하도록 면려하는 것이다.

중니(仲尼)의 제자가 3천 명이었지만 각자의 물음에 따라 대답을 달리했고, 봄이 만물을 화생(化生)하여 제각기 모양을 이루게 하듯이, 좋은 말 한마디와 착한 행실 한 가

지를 보고 들으면 터진 강하(江河)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대순(大舜)을 생각하고, 현명한 덕이 있으면 서토(西土)를 굽어 보살피던 문왕(文王)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한 치의 선이라도 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이 세상 모든 선이 다 나의 것이 되도록 한다. 물건마다 다 가지고 있는 태극의 성품을 거스르지 말고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태극으로부터 미루어 가 보면 그것이 각기 나뉘어 만물(萬物)이 되지만, 그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보면 도로 일리(一理)로 귀결되고 만다. 따라서 태극이란 상수(象數)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상수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음을 이름이며, 동시에 형기(形器)가 이미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치를 말하기도 한다.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았으나 태극 그 자체는 그대로 태극이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으면 양의가 태극이 되고,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으면 사상이 태극이 된다. 사상 위에 각각 획(畫)이 하나씩 생겨 다섯 획까지 이르게 되고, 그 획에는 기우(奇偶)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24로 제곱하고 또 제곱하면 획의 수가 1677만여 개에 달하는데, 그것은 또 모두 36분(分) 64승(乘)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그 수는 우리 백성 수만큼이나 많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한계를 지을 것도, 멀고 가까울 것도 없이 그 모두를 자기의 아량과 자기의 본분 내에 거두어들이고, 거기마다 일정한 표준을 세워 그 표준을 기준으로 왕도(王道)를 행하며, 그것을 정당한 길 또는 정당한 교훈으로 삼아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적용하면 여러 방면의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오복(五福)이 고루 갖추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온화한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깊이 있고 원대한 제도이겠는가.

공부자가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을 쓰면서 맨 첫머리에 태극을 내세워 후인들을 가르치고, 또 《춘추(春秋)》를 지어 대일통(大一統)의 뜻을 밝혀 놓았다. 구주(九州) 만국(萬國)이 한 왕(王)의 통솔하에 있고, 천 갈래 만 갈래 물길이 한 바다로 흐르듯이 천자만홍(千紫萬紅)이 하나의 태극으로 합치되는 것이다. 땅은 하늘 가운데 있어 한계가 있으나, 하늘은 땅 거죽을 싸고 있으면서 한도 끝도 없다. 공중에 나는 놈, 물속에서 노는 놈, 굽틀거리는 벌레, 아무 지각없는 초목들 그 모두가 제각기 영憔(榮悴)를 거듭하면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큰 쪽을 말하면 천하 어디에도 둘 곳이

없고, 그 작은 쪽을 말하면 두 쪽으로 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것이 바로 참찬위육(參贊位育)의 일인 동시에 성인이 하는 일인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성인을 배우는 일이다. 비유하자면 달이 물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밝다. 그 달이 아래로 비치면서 물 위에 그 빛을 발산할 때 용문(龍門)의 물은 넓고도 빠르고, 안탕(雁宕)의 물은 맑고 여울지며, 염계(濂溪)의 물은 겸푸르고, 무이(武夷)의 물은 소리 내어 흐르고, 양자강의 물은 차갑고, 탕천(湯泉)의 물은 따뜻하고, 강물은 담담하고 바닷물은 짜고, 경수(涇水)는 흐리고 위수(渭水)는 맑지만, 달은 각기 그 형태에 따라 비춰 줄 뿐이다. 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멎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그 물의 원뿌리는 달의 정기(精氣)이다. 거기에서 나는,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이 비춰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고 달은 태극인데, 그 태극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만천(萬川)의 밝은 달에 태극의 신비한 작용을 비유하여 말한 그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나는, 저 달이 틈만 있으면 반드시 비춰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태극의 테두리를 어림잡아 보려고 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달을 잡아 보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무 소용없는 짓임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나의 연거(燕居) 처소에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고 써서 자호(自號)로 삼기로 한 것이다. 때는 무오년(1798, 정조22) 12월 3일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독하다

발행일

2023년 11월 22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디자인 · 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비매품